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지침서

2010



[지침서 이용시 유의사항]

-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가 광공업동태조사와 통합되고(2008. 7월), 광공업동태조사가 광업제조업동향조사로 명칭 변경(2008. 10월)
- 본 지침서에는 구 광공업동태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산실적 부문』으로 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산능력 부문』으로 구분
- 제조업 세부 업종별 가동률 개발을 위한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총액 항목추가(2010.2월 통계변경 승인, 4월부터 조사 실시)
- 생산능력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이 지침서 외에 『생산능력 산정기준표』 를 함께 활용
- 지침서 이용 중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동향과로 연락요망 [생산실적 부문(042-481-2161~7), 생산능력 및 가동률 부문(042-481-2175~7)]

차 례

제 1 장 조사개요3
제 2 장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1
2. 사업체 관리요령
3. 현장조사요령 33
가. 면접조사 요령
나. 전자조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요령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4. 조사표 작성요령 3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다.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제 3 장 내용검토 및 입력 61
1. 내용검토 65
2. 입력 72
가. 입력에 관한 일반 사항
나. 직원용 입력 프로그램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
부 록 109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 근거	3
/3/ 조사연혁	4
/4/ 조사기간	5
/5/ 조사주기	5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6
/7/ 조사대상	8
/8/ 조사항목	10
/9/ 조사방법	10
/10/ 결과공표	11
/11/ 조사체계	- 11
/12/ 조사업무 흐름도	12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목적 및 필요성 :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 출판업 부문의 생산, 출하, 재고 동향과 제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을 파악하여 광공업 생산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등을 작성
- **활용분야 :** 작성된 지수는 국내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0111호)
 - ※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권 및 실지조사권
-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 명령)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조사연혁

가. 최초 작성기관

한국은행(1957년 8월) → 통계청(구: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1970년 7월)

나. 조사의 연혁

1957년 8월 1955년기준 산업생산지수 최초 작성(한국은행)	
1969년 1월 한국산업은행으로 지수편제 업무 이관	
1970년 3월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11호)로 고시	
1970년 7월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지수작성 업무 이관	
1970년기준, 1975년기준, 1980년기준 지수개편	
1988년 7월 1985년기준 지수개편(시도별 산업생산지수 작성)	
1993년 3월 1990년기준 지수개편(가스업 추가, 시도별 지수의 계절조정지수 경	낚성)
1997년 10월 1995년기준 지수개편(기업규모별지수, 산업형태별지수 작성)	
2002년 12월 2000년기준 지수개편(제조업ICT지수 작성)	
2008년 2월 2005년기준 지수개편	
2008년 7월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	
2008년 10월 광업제조업동향조사로 통계명칭 변경	
2010년 2월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총액 항목 추가	

< * 통합되기 이전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연혁 >

1970년 9월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조사 실시(일반통계 승인번호 제 111-21-02)
1972년 1월	1971년 기준 지수를 최초로 편제 공표
1976년기준 지]수개편
1977년 3월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지수작성 업무 이관
1980년기준, 1	985년기준, 1990년기준 지수개편
1993년 11월	신 승인번호 체계에 따른 일반통계 제10117호로 변경
1997년 10월	1995년기준 지수개편
1999년 12월	지정통계로 변경승인
2002년 12월	2000년기준 지수개편
2008년 2월	2005년기준 지수개편

다. 지수개편 주요내역

구분	작성기관	품목수 (생산)	선정기준	품목 대표도	사업체선정 (표본사업체)
55년기준	한국은행	77			
58년기준	한국은행	149			
60년기준	한국은행	169			
65년기준	한국은행	278		86.6%	
66년기준	한국산업 은행	333	'66년 산업센서스 결과 생산액기준으로 산업중 분류별 대표도가 90%이상이 되 도록 선정	89.6%	
70년기준		339		87.4%	
75년기준	경제기획원	420	해당연도 광공업 총생산액의 1/5000 이하 품목추가 선정	84.2%	4,500기
80년기준	조사통제국	451		84.3%	4,717개
85년기준		666		85.5%	9,108개
90년기준	통계청	678	해당연도 광공업 총생산액의 1/5000 이하 품목추가 선정 지역별 지수작성이 가능하도록 품목추 가 선정	84.2%	8,6007}
95년기준	통계청	665		84.9%	8,1267}
00년기준	통계청	647		84.5%	8,461개
05년기준	통계청	633		84.7%	8,3007}

4.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조사기준 시점	매월 말일(재고)
조사실시 기간	익월 1일부터 19일까지

5. 조사주기 : 매월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가. 모집단

- 모집단의 기초 자료는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종 사자 20인 이상(제주도는 10인 이상)사업체를 표본 집단으로 사용하였음, 다 만 종사자가 20인 미만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 포함
 - 지역별로 작성되는 광공업생산지수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체수 가 절대적으로 적은 제주는 10인 이상 사업체로 구성하였으며, 종사자수 2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도 품목별로 2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출하액보다 큰 사업체는 모집단에 포함
 - 또한 품목 특성상 대부분 사업체가 소규모인 연탄, 고령토, 어망, 제재목, 콘크리트벽돌 및 블록, 건축용가공석제품, 아스콘, 안경테, 소파, 단추, 복분자주(11개 품목)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품목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업체가 20개 미만인 경우 20인 미만 종사자수를 가진 사업체라도 모집단에 포함

나. 표본설계

1) 추출틀: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결과

2) 추출단위: 개개의 사업체단위(공장, 작업장, 광산 등)

3) 충화

- 조사대상 품목 및 지역별로 부모집단을 설정한 후 각 부모집단에 대해 전수 조사 대상 업체와 표본조사 대상 업체로 층화
- 전국에서 품목당 생산업체수가 20개 이하인 품목은 전수조사로 하고, 품목당 생산업체수가 20개를 초과하는 품목은 이들 중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조사를, 종업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체는 표본을 추출 (부차모집단 설정, 사업체수에 의한 층화, 종업원 수에 의한 층화)

4) 표본추출법

- 생산·출하·재고 부문
 - 조사대상인 사업체수를 고려하여 633개 대표품목을 전수조사품목(품목당생산업체수가 전국적으로 20개 이하이거나, 시도별로 3개 이하인 품목)과 표본조사품목으로 구분하고, 표본조사품목의 경우 종사자1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 100인 미만 사업체는 출하액 크기에 따라 절사법(cut-off)을 이용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만 조사
- 이 생산능력, 가동률 부문
 - 조사대상 288개 품목의 품목별 출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만 표본 으로 채택(cut-off)하여 조사
 - 생산·출하·재고 부문 표본 사업체 내에서 표본추출

5) 표본규모

- 생산·출하·재고 부문
 - 약 8,300개 사업체
- 이 생산능력, 가동률 부문
 - 약 2,600개 사업체

6) 표본관리

- ㅇ 표본보완
 - 시도별 생산지수 대표도 향상을 위하여 연간보정 시 표본사업체 보완
- ㅇ 표본관리
 - 매월 지방통계청별로 1개월간의 사업체 및 품목 변동내역을 파악하여 말일까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체관리
- 0 비표본 오차관리
 - 조사기획: 조사개념, 조사단위, 조사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 분류하여 조사지침서 및 품목해설집 보완·개선
 - 자료수집 및 확인: 현지지도방문을 통해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CASI(인터넷응답)업체의 입력 자료에 대해 철저검토
 - 자료처리 : 입력 자료에 대한 전산내검 기능강화·보완

7. 조사대상

가. 조사대상

1) 생산실적 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 출판업에 속하는 사업체 중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
 - ▶ 출판업은 3개 품목(서적, 일간신문, 정기간행물)만 조사대상으로 포함됨에 유의

2) 생산능력 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24개 중분류 업종 중 22개 업종 사업체
 - ▶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음
 - C18(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업종의 특성상 외주생산비중이 높고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노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능력측정이 어려움
 - C2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업종의 특성상 세부품목의 종류별로 단위와 규격이 다양하여 능력측정이 어려움

3) 사업체가동률 및 생산실적총액 부문

-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제조업체
 - ▶ 자체보유 생산설비가 전혀 없는 사업체는 제외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조사기간 중 설립 중에 있는 사업체
-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 •국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특수수용시설내 작업장

나. 조사단위

- 개개의 사업체 단위(공장, 작업장, 광산 등)로 조사
 - 따라서 사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업의 본사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작성해야 함
 - 생산, 출하, 재고지수는 전국뿐만 아니라 시·도별 지역지수도 작성하기 때문에 타공장분을 합산 조사하면 안 됨. 단, 사업체 사정 등으로 시·도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하해 합산조사가 가능할 수는 있음

< 기업체 및 사업체 구분방법 >

그 룹	기 업 체	사 업 체(조사단위)
H그룹	진솔(주)	진솔(주) 청주1공장 진솔(주) 청주2공장
	산하(주)	산하(주) 울산공장 산하(주) 영등포공장
	영진철강(주)	영진철강(주)

-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
- 사업체 :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8.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사 항
품 목 별 생산·출	○조사표 I - 조사표Ⅱ를 사용하는 품목 을 제외한 전 품목	·지정품목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자체생산, 위탁생산, 수탁생산) ·구입량 및 구입금액 ·재투입량 및 금액 ·출하량 및 금액(국내시판[내수], 수출, 동일 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출하) ·과부족 조정량 및 금액 ·월말재고량 및 금액
하 • 새고	○ 조사표Ⅱ - 44400(해상금속구조물) - 44809(원자로) - 75200~75700(선박, 전동차)	· 지정품목별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 당월 진척량(국내용, 수출용) ·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 당월완성품 인도량(톤수, 척수) ※ 제조공정이 길기 때문에 진척률로 파악
품 목 별 생산능력	○ 생산능력	・주요설비보유수 ・표준조업일수 ・1일표준조업시간 ・생산능력증감사유부호
사업체 가 동률 및 생산실적	ㅇ 가동률	가동률생산실적총액비고사항
고용 및 조업상황	ㅇ 고용사항	· 월말 종사자수
	○ 조업사항	・월중 조업일수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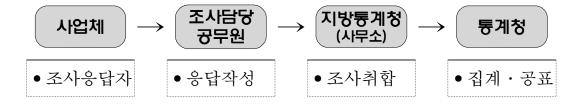
9.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담당공무원
- 자료수집방법 : 조사담당자 면접 타계식 방법과 자계식 방법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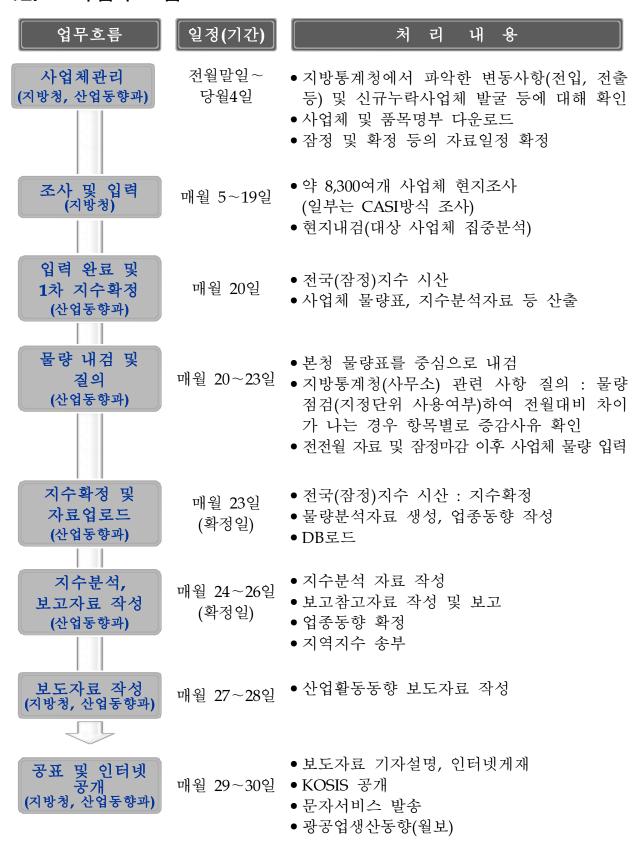
10. 결과공표

공표방법	 기자설명회(정부과천청사)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SMS문자서비스
공표범위	 업종별 기본분류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3대 대분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와 28개 중분류 및 85개 소분류 특수분류지수 : 중・경공업지수와 제조업ICT 지수 등
광표시기	•매월 말일 (매월 말일경에 전월의 실적에 관한 결과자료를 공표)
발간 간행물	보도자료 :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월보 : 광공업생산동향연보 : 광공업생산연보(디지털간행물로만 발행)

11. 조사체계



12. 조사업무흐름도



제2장

현 장 조 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15
/ 2 /	사업체 관리요령	15
/3/	현장조사요령	33
/4/	조사표 작성요령	37

제2장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 현장조사 직원의 기본자세(현장조사운영지침 제8조1)
 - 조사지침의 명확한 숙지와 성실한 조사
 -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 비표본오차의 최소화
 -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 기타 현장조사 직원의 품위 유지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 (통계법 제33조①항)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통계법 제33조②항)
-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통계법 제34조)

2. 사업체 관리 요령

가. 개요

1) 관리 목적

○ 조사대상 사업체 및 조사대상 품목의 변동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체 및 품목의 누락·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정도 높은 통계 작성에 기여

¹⁾ 개정 통계청훈령 제213호 2010. 1. 12.

2) 조사모집단 및 조사대상 사업체

(가) 조사모집단

-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종사자 20인(제주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중 대표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 ※ 단, 고령토, 복분자주, 어망, 제재목, 연탄, 콘크리트벽돌 및 블럭, 건축용 가공석제품, 아스콘, 안경테, 소파, 단추는 5인이상 사업체

(나) 조사대상 사업체 선정

- 조사대상품목을 전수조사품목(품목당 생산업체수가 전국적으로 20개 이하이 이거나, 시·도별로 3개 이하인 품목)과 표본조사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
- 표본조사품목 생산업체 가운데도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이면 모두 조사
- 표본사업체는 총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업체를 추출하는 절사법(Cut-off)방식을 적용하여 선정

3)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 IPS 프로그램 입력은 매월 지수확정일 다음날부터 말일까지

4) 관리 체계

○ 매월 각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1개월간의 사업체 및 품목 변동내역을 파악하여 말일(말일이 공휴일이면 전날)까지 IPS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이를 산업동향과에서 검토 및 집계

5) 관리 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체 단위(공장, 작업장, 광산 등)
- ㅇ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 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6) 관리 사항

- 기존 조사 대상 사업체의 변동 사항
 - 휴업, 폐업, 전출, 전입, 합병, 관할신규, 관할해소, 대상외, 재가동
 - 생산 품목의 신규, 중지, 전입, 전출, 누락, 관할신규, 관할해소
 -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사담당자 변경 등
- 신규 조사대상 사업체에 관한 사항

7) 관리 방법

- 지방통계청(사무소)
 - 매월 신규, 누락 및 기존사업체의 사업체 변동과 품목별 변동사항을 파악 하여 IPS 프로그램에 입력
 - 시·도, 공단, 언론 등을 통해 신규 및 누락 사업체를 발굴한 경우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대상업체 여부(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를 파악한 후 IPS 프로그램에 입력
 - 사업체 및 품목의 전입, 전출, 관할해소, 관할신규는 매월 28일까지 각 지방통계청(사무소)간 자료전송(IPS 프로그램에 입력) 및 유선통보가 이루어 져야 함(유선통보 후 전월 조사표사본 및 현장조사기록부 원본을 우편송부)
- 0 산업동향과
 - 각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전산입력한 변동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변 동내역별 집계
 - 매월 조사대상 사업체 및 품목 확정(익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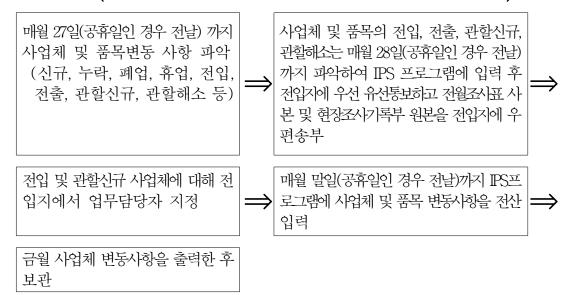
8) 보고 방법

- 각 지방통계청(사무소)은 사업체유고, 품목유고, 행정구역, 담당자 변경시 출력물 보관
- 사업체관리(IPS 프로그램에 자료입력) 마감일은 매월 말일

< 예 시 >

- ▶ 11월 30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 •토요일인 경우: 11월 29일(금요일) 마감
 - •일요일인 경우: 11월 28일(금요일) 마감
- ※ 사업체관리 마감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파악된 경우, 산업동향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9) 업무흐름도(IPS 프로그램에 자료 입력기간: 매월 22일~말일)



나. 유고내역별 사업체관리

1) 신규 사업체

(가) 전국품목

- ① 전수조사품목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분류」의 품목번호에 "(전)"으로 표시한 품목으로 종사자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 산업동향과로 통보하고 사업체관리 후 조사개시
 - 20인 미만이면 사업체의 변동이 생기는지 평소에 관찰

② 표본조사품목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분류」의 품목번호에 "(표)"로 표시한 품목인 경우
 -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산업동향과로 통보하고 사업체관리 후 조사개시
 - 종사자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동향과로 다음사항을 통보하고 산업동향과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체관리 및 조사개시

○ 통보내용: 사업체명, 주소, 생산품목, 종사자수, 매출액(전년)

< 표본층 사업체종사자수의 변경과 대상처 유지와의 관계 >

- ▶ 산업동향과에서는 전년도 광업제조업조사의 품목별 출하액에서 표본추출 당시 품목별 절사점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여부 결정
- 통계적 대표도 유지 차원에서 지속, 절사점 부근의 사업체는 유지, 감소는 많으나 증가가 없으므로 유지 등 실무적 한계가 있으며, 그 폭이 심한 경우 연간조사의 결과 등을 보고 결정

③ 생산능력대상품목:

- ○「부록 8.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부문 품목비교표」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
 - 산업동향과 생산능력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조사대상여부는 별도의 지 시가 있을 경우 사업체 관리 및 조사실시

(나) 지역특성품목

- 품목번호의 끝자리가 "9"인 품목
 - 각 시·도의 지정 조사품목에 해당되며 사업체관리요령은 전국품목과 동일(해당지역에서는 전수품목임)
 - 제주의 경우 10인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

< 신규·누락사업체 등 최초 조사 시 유의사항 >

- ▶ 조사대상 품목여부 확인 철저
 - 조사대상 품목분류의 정확성 및 개념일치 여부 확인
 - 품목별 조사단위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일치성 및 환산방법
- ▶ 생산능력 조사대상 여부 확인 철저
 - 생산실적 조사대상 품목이 생산능력 대상품목이고, 생산(제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능력 조사대상 사업체임
- ➡ 응답자 변경 시 조사 작성의 유의사항(품목포괄범위, 단위환산 등)을 인계인수토록 주지
- ▶ 인터넷조사(CASI) 가능성 여부 및 의향 확인

2) 휴 · 폐업 사업체관리

(가) 휴업

- 생산설비가 있으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 향후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체
- 매월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누락 방지
- 휴업 사업체인 경우라도 6개월까지는 휴업으로 유지
- 생산 재개시의 경우 사업체관리(IPS) 보고(※유고 부호 A;재가동 부여)

(나) 폐업

- 생산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 생산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나 타사업체로 **합병되는 사업체**
- 휴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생산재개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산업동향 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한 후 폐업 처리
- ※ 단, 계절품목(천일염, 벽돌 등)은 휴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폐업으로 처리해서는 안됨

3) 전입·전출 사업체관리

<전입지에서의 처리방법>

- ㅇ 전국지수품목 조사사업체
 - 사업체관리(전입)후 조사개시
- 지역특성품목
 - 지정품목으로 채택된 시·도에 해당되는 지방통계청(사무소)에 한하여 사업체관리(전입)후 조사 개시
- 전국 및 지역특성품목 동시조사 사업체
 - 전국지수 품목은 무조건 조사대상이며, 지역특성품목은 지정품목으로 채택된 시·도에 해당하는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만 조사대상

<전출지에서의 처리방법>

- 사업체관리(전출) 후 전입지 지방통계청(사무소)에 해당사업체의 내용을 유 선 통보한 후 전월 조사표 사본 및 현장조사기록부의 원본을 첨부하여 전입지에 우편발송(매월 28일까지 IPS 프로그램에 입력)
 - □ 전출 사업체 및 관할해소 사업체 발생시 해당 전입지 지방통계청(사무소) 사업체담당팀장과 우선 유선통화 한 후 전월조시표 사본 및 현장조사기록부 원본을 전입지에 우편발송

다. 사업체관리 항목 설명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영문사용 가능)로 입력

2) 항목별 사업체관리현황 작성요령

[사업체 일련번호]

- 사업체 일련번호는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 또는 누락된 사업체 일련번호는 해당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 ※ 각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신규사업체 고유 번호대장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부여된 사업체번호의 다음번호를 부여

[사업체명]

- 사업체명은 공식명칭을 기입. 단 『주), (주), 주』는 사업체명 끝에 입력
 - □ (예) ××공업 주)울산공장, ××산업(주), ××전자 주 기흥공장
 - 모집단명부상 사업체명과 공식명칭이 다른 경우 공식명칭을 기입

[지방통계청(사무소)]

- 해당되는 지방통계청(사무소) 코드를 입력
- 사업체의 전출 및 관할해소를 할 때 사용하는 항목으로 지방통계청(사무소) 코드만 수정하면 자동적으로 타 지방통계청(사무소)으로 사업체가 이전됨

※ 사업체의 전출, 관할해소 절차는 사업체 유고부호 설명 부분을 반드시 참조

▶ (예) 경인: AA, 동북: BA, 호남: CA, 동남: DA, 충청: EA 등

[담당자ID]

- IPS 메뉴 중 담당자설정에 담당자 ID 및 담당자명을 저장해 두면 담당자 ID만 입력해도 담당자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
 - ▶ (예) AA001, DA002

[담당연월]

- ㅇ 현 사업체를 담당한 연도와 월을 기록
 - ▶ 『200901』 (2009년 01월 담당)

[이전담당자]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

[입력구분]

- 사업체 실적을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입력하는지, 사업체에서 입력하는지 구분
 - -『1』: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직접 입력
 - 『2』: 사업체에서 직접 입력(인터넷 조사업체)

[창설연월]

 법인인 경우는 법적 창설연월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는 현사업체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연월(가동연월)을 말함(개인 사업체가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시점을 창설연월로 조사)

- 본사와 사업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말하며, 업종 (대분류)이 변경된 때는 변경시점이 창설연월이 됨
- 동일 업종으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때는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보지 않음
 - ▶ 2009년 2월 창설 → 『200902』 로 입력

[행정구역 분류부호 및 공장소재지]

- ㅇ 사업체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분류부호로 기입
- 소재지는 현재 사업체가 위치한 법정동 주소를 기입
- 사업체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 분류부호가 개정되는 경우, 신부호 로 정정

[종사자수]

- ㅇ 산업동향과에서 입력
- 매월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분(매년 2월) 사업체관리시 한번 수정함 ※ 직전연도 월말 종사자수의 평균 기준

[응답부서, 응답자명, 전화번호]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명과 전화번호(지역번호까지) 를 기입
- 응답부서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 입력
 - ▶ (예) 응답부서: 경리과, 응답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31-491-1361

[E-mail]

○ 응답자의 E-mail을 입력

[팩스번호]

ㅇ 응답자의 팩스번호를 입력

[능력응답자명(부서명), 전화번호]

○ 생산능력·가동률 관련 응답자 성명과 부서명, 전화번호 입력 ※ 생산·출하·재고 부문 응답자와 동일하더라도 위 형식에 맞춰 입력

[산업분류]

- ㅇ 생산품목의 산업소분류를 기입
- 생산품목이 다양하여 2개 이상의 산업소분류인 경우 각 산업소분류별 출하액 합이 가장 큰 산업소분류를 기입
 - 조사표 Ⅰ,Ⅱ를 모두 작성하는 사업체도 출하액 합이 가장 큰 소분류를 기입
- 매월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분 사업체관리시 전년 출하액 비중을 비교하여 연간 1회 수정함
 - ※ 연중이라도 기존 산업소분류 품목의 생산을 중지하고 다른 산업소분류 품목 생산할 경우는 산업소분류 변경

[HomePage]

- ㅇ 사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
-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체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사업체 유고코드]

< 사업체 유고코드 >

- ① 신 규 ② 폐 업 ③ 휴 업 ④ 전 입
- ⑤ 전 출 ⑥ 누 락 ⑦ 관할신규 ⑧ 관할해소
- ⑨ 중지, 대상외⑩ 합병, 합산④ 재가동

① 신규

- 산업동향과에서 표본 보완을 위해 새로 지정한 사업체
- 조사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사업체)이 새로 설립된 경우
- 새로운 사업체 발견시점이 생산 가동 후 3개월 이내는 『신규』로, 4개월

이후는 『누락』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

■ A사업체가 2009년 1월부터 생산 가동할 경우 이 사업체의 발견시점이 2009년 3월까지는 신규 사업체이며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누락 사업체임

② 폐업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 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 해체된 경우
- 합병으로 타공장에 흡수된 경우
- 폐업 시 재고가 있는 경우,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

③ 휴업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 채로 1개월 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 □ 단,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체로서 생산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는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후 폐업으로 정리

④ 전입, ⑤ 전출

- 행정구역(각 광역시·도)의 경계를 달리하여 공장(사업체) 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는 전입, 이전하기전 장소의 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는 전출
- 행정구역 관할변경으로 소속 광역시·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출·입 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의 사업체이동은 전입·전출로 보지 않음
 - ※ 이 경우는 소재지 변경(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관할 변경(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 □ 대구(동북지방통계청)에서 경북 상주(상주사무소)로 사업체가 이전되는 경우는 전출입에 해당되나, 경남 김해(김해사무소)에서 경남 진주(진주사무소)로의 사업체 이전은 조사관할 변경에 해당

⑥ 누락

- 사업체 발견 시점이 실제 가동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규"와의 구분 철저

⑦ 관할신규, ⑧ 관할해소

- 사업체가 이전하였으나 행정구역분류상의 광역시·도는 변경되지 않고 지방통계청(사무소)간의 관할만 바뀌는 경우
- 사업체의 소재지(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 ☑ (예) 본사조사에서 사업체조사로 변경, 사업체조사에서 본사조사로 변경

⑨ 조사중지, 대상외

- 조사대상 사업체로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타산업(건설, 도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재고가 있는 경우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

① 합병·합산

- 조사대상 사업체가 타 조사대상 사업체를 흡수하여 경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사업체로 결합되는 경우 → 피합병사업체는 폐업처리
 - ※ 단, 조사대상 사업체가 타 조사대상 사업체를 합산하였으나 경영, 장부 및 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사업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2개의 사업체로 유지

(A) 재가동

- 휴업인 조사대상 사업체가 생산시설을 재가동 할 경우

※ 사업체 유고코드 IPS 프로그램 처리방법

< IPS 프로그램 처리방법 >

▶ 사업체 전출(⑤), 관할해소(⑧)의 경우

- a) 유고부호 코드 및 유고연월(사업체 유고부호 및 연월, 품목 유고부호 및 연월도 반드시 수정)을 입력
- b) 담당자 ID, 담당연월 삭제(빈 공간으로 처리)
- c) 이전 담당자란에 기존 담당자 이름을 입력
- d) 행정구역 입력란 삭제(빈 공간으로 처리), 이전주소란에 기존 행정구역을 입력
- e) 지방통계청(사무소) 코드 입력란에 전출 보내는 사무소 코드를 입력

□ 전입(④), 관할신규(⑦)의 경우

- a) 타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전출, 관할해소 한 사업체는 그 내용이 전송되어 전입 및 관할신규 사무소 IPS 프로그램에 보여짐
- b) 지방통계청(시무소)의 총괄 담당자는 해당 사업체를 업무분장 후 담당자 ID, 담당자명, 담당연월, 행정구역 분류부호, 사업체 유고부호 및 연월, 품목 유고부호 및 연월 입력

[유고연월]

- ㅇ 사업체 유고사항이 발생한 연월을 입력
 - ▶ (예) 2009년 2월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

→ 유고코드: 『2』, 유고연월: 『200902』으로 입력

[기업구분]

○ 산업동향과에서 입력(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작성구분]

- 당해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작성 : 『1』
- 주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에서 작성 : 『2』
- 사업체와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본사에서 작성 :하면 『3』으로 기입

라. 품목관리 항목 설명

1) 추가

○ 신규품목을 추가시킬 때 사용

2) 수정

○ 기존 품목사항을 수정할 때 사용

3) 삭제

-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였을 경우 정정하기 위해 사용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하며,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품목 착오로 처리
- ※ 품목 중지, 품목 착오 등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품목유고 코드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됨

4) 사업체 품목 추가・수정 화면

(가) 품목코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분류』 책자에 기재되어있는 품목번호를 입력 (품목명은 자동적으로 입력됨)
- 생산능력 품목번호 입력시 첫 자리에 『A』영문자(추후 『S』로 변경 예정)를 입력

▶ (예) 광공업생산 : 『00100』, 『57500』

생산능력 : 『A00100』, 『A20000』

(나) 품목명

○ 품목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명이 입력됨

(다) 품목단위

ㅇ 품목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품목 단위가 입력됨

(라) 조사종류

ㅇ 품목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생산실적부문 품목인지 생산능력부문 품목인지 자동적으로 입력됨

(마) 최초생산

- 최초생산 : 해당 지정품목을 최초로 생산한 연월을 기입
- ㅇ 누락 품목일 경우도 지정품목의 최초 생산 연월을 반드시 입력

(바) 품목구분

- ① 전수품목: 468개 품목(출판업 1개)
- ② 표본품목: 165개 품목(출판업 2개)
- ③ 지역특성품목: 164개 품목

(사) 품목유고

< 품목유고 부호 >

- ① 신 규 ② 중 지 ③ 착 오 ④ 전 입

- ⑤ 전 출 ⑥ 누 락 ⑦ 관할신규 ⑧ 관할해소

① 신규

- 기존사업체에서 설비를 신설하여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

② 중지

- 사업체에서 조사 중이던 품목의 생산설비 폐기 등으로 생산을 중지
- 품목중지시 재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③ 착오

- 품목개념, 범위 등의 착오로 잘못 조사된 품목(조사 중지)
- 품목착오시 재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 ④ 전입, ⑤ 전출
 - 해당품목이 광역시·도간의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이전
- 사업체 전출입시 반드시 품목에도 전출입 부호 기입
- ⑥ 누락
- 사업체에서 생산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조사하지 못한 품목
 - □ (예) 2008년 9월에 최초로 생산하였던 품목을 조사누락 시켰다가 2009년 4월에 발견한 경우 최초생산은 『200809』이며, 품목유고는『6』, 유고연월 『200904』로 반드시 입력 할 것
- ⑦ 관할신규, ⑧ 관할해소
 - 사업체의 관할신규 또는 관할해소가 발생하는 경우 품목도 동일하게 관할신규 또는 관할해소로 처리

(아) 유고연월

- 품목유고 사항이 발생한 연월을 입력

▶ (예) 2009년 3월에 신규품목을 생산한 경우→ 유고코드: 『1』, 유고연월: 『200903』로 입력

마. 사업체가동률 관리 항목 설명



1) 추가

○ 사업체가동률정보를 신규로 추가시킬 때 사용

2) 수정

○ 기존 사업체가동률정보를 수정(운영형태변경, 가동률유고 코드변경 등) 할 때 사용

3) 삭제

- 추가한 사업체가동률정보를 제외할 때 사용
- ※ 운영형태 변경, 가동률유고 발생 등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삭제를 하면 안 되고 수정항목에서 가동률유고 코드로 기록을 남겨야 함
- 4) 사업체가동률 추가 · 수정 화면
- (가) 운영형태
 - 단독
 - 사업체 사업활동이 단일 경영단위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사업부
 - ㅇ 사업체 사업활동이 사업부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
 - ③ 2개업종이상
 - ㅇ 산업동향과에서 다업종 사업체로 지정한 경우
 - ※ ②사업부와 ③2개업종이상이 중복된 경우, ②사업부로 지정
- (나) 사업체가동률 유고

< 사업체가동률 유고코드 >

- ① 신 규 ② 폐
 - 업
- ③ 휴 업
- ④ 전 입

- ⑤ 전 출
- ⑥ 누 락 (7) 관할신규
- ⑧ 관할해소

- ⑨ 타산업 대상외 ⑩ 사업체합병 A 재가동
- ® 4대조건 대상외

- © 사업부신규 D 사업부폐지
- ② 운영형태변경중지
- ※ ① ~ △ 는 사업체 유고코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⑧ ~ ⑥ 는 사업체가동률 특성상 유코코드를 세분화 함
- ® 4대조건 대상외
 - 생산(제조)시설이 없더라도 4대조건에 만족하여 동향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체는 사업체가동률조사에서 『4대조건 대상외』로 처리
 - ※ 대상외 경우 ⑨ 타산업 대상외와 ® 4대조건 대상외로 구분됨에 주의

© 사업부신규

- 사업체 운영형태가 사업부단위로 변경되었거나 기존 사업부 운영형태 사업체에서 사업부가 신규 된 경우

① 사업부폐지

- 사업부 운영형태 사업체에서 기존 사업부가 폐지 된 경우

(E) 운영형태변경중지

- 사업체에서 타 운영형태로 변경하여 중지된 경우
- ※ 가동률유고 코드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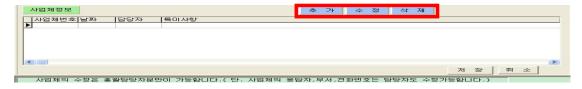
(다) 업종코드

- 생산품목의 출하액 합이 가장 큰 산업소분류 중 2자리(중분류) 기입
- ※ 단, 26업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은 3자리(소분류) 기입
- 생산품목이 다양하여 2개이상의 산업소분류인 경우 각 산업소분류별 출하액 합이 가장 큰 산업소분류를 기입
- 사업부의 경우 사업부 내에서 생산품목의 출하액 합이 가장 큰 산업소분류 기입

(라) 유고연월

○ 사업체가동률 유고사항이 발생한 연월을 입력

바. 사업체정보 항목설명



1) 추가

- 사업체정보 특이사항을 추가시킬 때 사용
 - □ (예) XX조선 외국국적의 선박이 수출이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요망
 △ △ 제과 200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연간보정 필요

2) 수정

○ 기존 사업체정보 특이사항을 수정할 때 사용

3) 삭제

○ 기존 사업체정보 특이사항을 삭제할 때 사용

3.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 1)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 ㅇ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ㅇ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 2) 현장방문조사 실시 기준 : 현장조사운영지침 제4조4를 참고
- 현장조사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조사를 목적으로 조 사대상처를 월 1회 이상 방문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CASI(인터넷) 또는 팩스·전화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면접하거나 관리

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요령(현장조사운영지침 제6조, 제7조를 참고)

1) CASI(인터넷)

- 지방통계청(사무소) 현장조사 직원은 응답자의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인터넷 대상처 확대에 적극 노력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CASI를 희망하는 경우 조사 실시

²⁾ 개정 통계청훈령 제213호 2010. 1. 12.

2) 통신매체조사

-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응답자의 부재 등으로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자가 통신매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와 사업체 가 원거리(60km이상)에 위치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과장이나 사무소장이 통신매체조사 를 허용하는 경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통신매체의 종류를 기록

다. 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1) 지방통계청(사무소) 대응 방법

- 불응 발생시점 3주 내에 최소 3회 이상 출장 설득 시도
- 지방청(사무소) 명의 조사협조 공문 전달
- 담당자, 팀장, 과장, 지방청장(소장)은 사안별로 대처

2) 산업동향과 대응 방법

-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불응 및 장기부재에 따른 조사불응 대처에 따라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동향과에서 검토
- 산업동향과 조사협조 문서 발송
 - 지방청, 사무소(출장소)의 조사 설득 시도 이후 계속 불응시 시행

3) 계속불응사업체에 대한 처리

- 불응사업체 자료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체와 부과 대상 제외 사업체를 분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체의 경우
 -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문서로서 알림
 - 계속 불응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름
-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사업체의 경우(경영난, 기준미달 영세업체 등)

- 지방통계청(사무소)별로 자체 설득 계획을 세워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유도
- 대체 가능한 사업체가 발견되면 대체 검토
- ㅇ 과태료 부과 결정시 납입고지서는 운영지원과 용도계에 의뢰

4) 불응사업체 과태료 부과처리 절차

①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에 의거 자료제출 협조문서 시행

- 명시해야 할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40조)
 - 자료제출명령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 제출할 자료의 내용
 - 자료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자료를 제출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41조에 다른 과태료처분 안내

② 과태료 부과 판단 의뢰 또는 본청 해당과의 자체 판단

- 본청 해당과에 과태료 부과 검토 의뢰
-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법적근거, 위반 일자, 위반내역, 과태료 금액,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 본청 해당과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판단

③ 과태료 부과 결정

- 본청 해당과에서는 지방통계청 보고내용 검토 후 간부회의 등을 거쳐 결정
-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을 지방통계청에 통보

④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 지방통계청에서는 조사대상처에 사전통지서를 발부
 -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주고, 과태료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함
 - 의견 제출 시 지방통계청 과태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수용여부 결정, 의견이 수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⑤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 지방통계청에서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본청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여 발 부 받은 후,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처에 송부
 - 조사대상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통계청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함
- 지방통계청에서는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해야함

⑥ 과태료 납부

- 지방통계청에서는 체납 발생시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본청 운영지원 과에 의뢰하여 발부받아 조사대상처에 송부
- 강제징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⑦ 기타

- 지방통계청에서는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함

4. 조사표 작성요령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 대상품목은 통계청에서 지정한 품목에 한정되며 다만, 신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 사업체의 휴·폐업, 이전, 합병, 분사(分社) 등 조직·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파악
-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작성시 문의 사항에 대한 질문에 친절히 답변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품목별 생산실적·출하·재고]

L - ' -		
자체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
▶ 생산	• •	한 경우
	위탁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
실적	Ħ≒	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한 경우
	ΛEI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로
	수탁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경우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N 701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하였거나, 동일기업내의 다른
▶ 구입		공장에서 입고하거나 빌려온 제품(※구입분이 출하, 재고
		에서 구분 가능하면 조사에서 제외)
		•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공정에 원재료,
▶ 재투입	1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소비되었거나, 위탁 생산업체
		에 원재료, 연료, 촉매제 등으로 제공한 경우
		•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국내 판매업자, 타 사업체, 기관,
	내수	단체, 소비자 등에게 출하되었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생산
		하는 수출용 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경우
▶ 大 ₺	△本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 출하	수출	수출 또는 주한 외국군, 면세점으로 납품한 경우
	타공장 및	●동일조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
		되었거나, 선물, 견본, 전시용, 제품포장용, 설비보수용 등
	기타출하	으로 출하된 경우

▶ 과부족	 폐기처분, 화재, 수해, 도난, 파손, 분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계상 함수관계(전월재고 + 금월생산 + 구입 - 재투입 - 금월 출하 ± 과부족 = 금월재고) 불일치에 대한 보정
▶ 월말재고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의 월말기준 재고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도 포함
▶ 비고사항	• 전월대비 30%이상 증감되었거나 과부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목별로 자세히 기입

[품목별 수주량·진척량]

▶ 당 월	국내용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
수주량	수출용	받은 량 ●국내 수주량과 수출 수주량으로 구분하여 기입
	국내용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 중인 선박, 전동차의 공정
▶ 당 월 진척량	수출용	진척률에 따른 환산량으로 개별 선박, 전동차의 진척량 (수주량×당월공정진척률)의 총합을 기입 •국내 진척량과 수출 진척량으로 구분하여 기입
	국내용	
▶ 수 주 잔 량	수출용	 총수주량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뺀 나머지 수주량 국내 수주잔량과 수출 수주잔량으로 구분하여 기입 ※ 금월수주잔량=전월 수주잔량 + 당월 수주량 - 당월 진척량
	톤 수	• 공정 진척도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 당월 완성 인도	척 (량)	주문처에 납품한 량 - 선박은 완성인도 『톤수』,『척(량)』란을 모두 기재 - 전동차는 『척(량)』란에 완성 전동차 수(량)만 기재 - 원자로는 『톤수』란에 'MW',『척(량)』란에 원자로 호기를 기재 - 해상금속구조물은『톤수』란에 'M/T',『척(량)』란에 구조물 수를 기재

[품목별 생산능력]

▶ 생산능력	 최대생산능력에 설비효율이 감안된 적정생산능력을 말함 해당 사업체의 지정된 조업시간, 조업일수 및 단위시간당설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주요설비보유수	●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설비수
▶ 표준조업일수	• 사업체에서 지정한 조업일수로서 통상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에 따라 노무관련 부서가 작성한 『연간지정조업일수 /12』로 산정(토요일의 경우 오전 또는 오후만 조업하는 경우 0.5일로 환산)
▶ 1일표준 조업시간	• 사업체에서 지정한 1일 지정조업시간으로서 통상 기본작업 시간에 정규적인 잔업시간을 더한 실제조업시간으로 산정 ※ 식사시간을 제외한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시간
▶ 생산능력증감 사유부호	•지난달과 생산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
▶ 비고사항	● 생산능력 변동사유 또는 참고사항을 품목별로 자세히 기입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가동률의 기본개념에 합당하고 사업체의 가동 상황을
▶ 가동률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4개의 계열 중 하나를 선택
	① 금액 ② 시간 ③ 생산직종사자 ④ 기타
	●해당 월 동안 생산된 모든 제품(완제품,반제품 등)에
▶ 생산실적총액	대하여 작성
	●생산실적총액=매출총액+월말 총재고액-월초 총재고액
► HI⊐ Mŏi	●가동률 증감 원인 및 산정 기준의 변경 등 특기사항이
▶ 비고사항	있는 경우 활용

[고용 및 조업상황]

▶ 월말종사자수	● 월말 기준의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 220/1/1T	종사자와 파견받은 종사자의 총합
●월 중에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한 일수(휴일을 포함	
▶ 조업일수	동안의 실제 공장 가동일수)
▶ 1일평균조업시간	● 해당월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 ÷ 월중 조업일수
▶ 비고사항	• 고용 및 조업상항 관련 특기사항 기록

< 조사표 구성>

1) 일반적인 사항

행정구역분류부호	○ 담당자ID
○ 산업분류	ㅇ 조사연월
사업체일련번호	ㅇ 잠확정 구분
ㅇ 사업체고유번호	

2) 품목별 생산실적 부문

[조사표 I 에 관한 사항]

○ 품목번호	ㅇ 재투입
○ 품목명	o 출하(내수, 수출, 타공장 및 기타출하)
ㅇ 단위	ㅇ 과부족
○ 생산실적(자체, 위탁, 수탁)	ㅇ 월말재고
ㅇ 구입	ㅇ 비고사항

[조사표Ⅱ에 관한 사항]

ㅇ 품목번호	○ 당월진척량(국내용, 수출용)
ㅇ 품목명	○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ㅇ 단위	○ 당월완성인도(톤수, 척(대))
○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ㅇ 비고사항

3) 품목별 생산능력 부문

ㅇ 품목번호	ㅇ 표준조업일수
ㅇ 품목명	○ 1일표준조업시간
ㅇ 단위	ㅇ 생산능력증감사유부호
ㅇ 생산능력	ㅇ 비고사항
ㅇ 주요설비보유수	

4) 사업체가동률 및 생산실적 부문

ㅇ 가동률	ㅇ 비고사항
ㅇ 생산실적총액	

5) 고용 및 조업상황

○ 월말종사자수	○ 1일평균 조업시간
○ 조업일수	ㅇ 비고사항

6) 사업체명 및 응답자

ㅇ 사업체명	ㅇ 전화
ㅇ 부서	○ FAX
ㅇ 성명	○ E-Mail

다.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1) 일반사항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재D		

(20	□□년 □□	월 분)
1. 당월확정	2. 당월잠정	3. 전월확정

► JIOIHIHI	● 해당 사업체의 정보를 입력
▶ 기입방법	단, ※의 경우에는 통계조사관이 기입
▶ 항목별	
작성기준	
○ 행정구역	• 한국행정구역분류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7자리를 기입
분류부호	● 본사조사인 경우 반드시 조사대상 사업체가 실제로 소재하는 지역
	의 행정구역분류부호를 부여하여야 함에 유의
	• 사업체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분류부호가 개정되는 경우는 신부
	호로 정정
○ 산업분류	• 조사품목의 산업 소분류(3자리)를 부여
	•다만, 조사품목이 다양하여 2개 이상의 산업분류로 구분되는 경우
	에는 동일 산업분류에 속하는 품목들의 연간 출하액 합계가 가장
	큰 산업분류를 기입
	• 조사품목이 다양하여 2종류(조사표 I, II)의 조사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도 조사품목들의 연간 출하액 비중이 높은 산업분류부호를 기입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신규 지정품목을 생산하여 신규 품목이 주종
		품목이 되면 매년 1월분 사업체관리시 신 품목에 해당되는 산업
		분류를 기입하고 산업동향과로 보고
		• 전국지수 지정품목과 지역특성품목을 함께 생산할 경우에도 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산업분류를 변경할 경우는 사업체관리 담당자와 협의한 후 변경
0	사업체	• 지정된 사업체일련번호(7단위)를 사용하며 변경지시가 없는 한 임의
	일련번호	변경 불가
0	사업체	● 사업체 모집단 DB의 사업체고유번호
	고유번호	
0	담당자ID	• 지방통계청(사무소) 조사담당자의 개인 ID번호를 기재
0	조사연월	• '년'과 '월'은 2자리 숫자로 기입하고, 조사 자료가 당월확정, 당월
O	. —	잠정, 전월확정인지 해당번호에 ○표시
	및 자료의	• 전전월 자료가 잘못되어 정정 보고하는 경우는 별도 서식(IPS의 엑셀
	잠확정 구분	서식 참조)에 의거 매월 조사 마감시까지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에
		게 유선 보고 후 조사표를 스마트플로우(Smartflow) 우편 등으로 보고

2)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사항

※ 끝	등 목 번	호	1	2	3
※끝	두 목	명			
※ ₹	<u> </u>	위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생	자	체			
생산실적	위	탁			
적	수	탁			
구		입			
재	투	입			
출	내	수			
	수	출			
하	타공장및기타	출하			
과	부	족			
월	말 재	고			
时	고 사	항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는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정보 기입방법 를 입력(조사담당자) 단, ※의 경우에는 통계조사관이 기입 ▶ 항목별 작성기준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분류(품목해설집)』에 기재된 품목번호 ○ 품목번호 및 및 품목명을 기입 품목명 • 품목번호 체계(5자리) - 처음 세자리는 조사대상품목 797개(전국품목: 633개(출판업 포함 636개), 지역특성품목: 164개) 품목의 일련번호이며 - 마지막 두자리는 품목 특성번호로서 마지막 두자리가 「00」: 전국지수 품목번호 마지막 두자리가 「9X(X=1,2,3..8)」: 세분품목번호 마지막 두자리가 「09」: 지역특성 품목번호 •물량 세분품목의 경우 지수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은 기입 않음 1 0 3 0 0 0 합성섬유직물*(지수품목: 기입 않음)* 1 0 3 9 1 순합성섬유직물*(물량세분품목)* 1 0 3 9 2 혼방합성섬유직물**(물량세분품목)** 1 0 3 9 3 합성섬유파일직물*(물량세분품목)* ○ 단위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분류(품목해설집)』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여 기입 • 조사표 I 대상품목은 지정수량 단위에 의한 물량조사와 함께 금액조 사도 병행(수량 또는 금액조사가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 ○ 생산실적 • 생산은 자체생산, 위탁생산, 수탁생산으로 구분하여 수량 및 금액조사 • 이 중 자체생산과 위탁생산만 생산실적 부문의 생산으로 집계·처리 되고 자체생산과 수탁생산은 생산능력 부문의 생산으로 집계·처리됨 ※ 구 광공업동태조사는 '생산실적 부문'으로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는 '생산능력 부문'으로 구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재투입되고 있는 품목도 조사대상품목인
	경우는 빠짐없이 조사해야 함
	●조사표Ⅱ에 해당되는 품목이거나, 3개월 이상의 장기 공정을 요하는
	품목은 매월의 진척량을 조사(당월진척량을 생산으로 조사하고 출하
	된 것으로 간주)
	- 조사표Ⅱ를 사용하는 품목 : 품목번호 44400(해상금속구조물),
	44809(원자로), 75200~75700(선박, 전동차)
	- 생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된 생산자판매가격
	(공장도가격)으로 파악
	※ 제조원가가 아님에 유의
- 자체생산	•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
1 11012	• 사업체에서 자가소비(재투입)를 목적으로 생산
	•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주문 받아 생산은 하지만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예: OEM생산)
	• 주문업체에서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원재료를 제
	공받아 생산한 것도 자체생산에 포함(비제조업체가 주문한 생산 포함)
01.11.1	
- 위탁생산	• 위탁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원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비를
	제공하여 다른 업체에 주문 생산
	※ 따라서 조사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님에 유의
- 수탁생산	• 위탁생산의 반대개념으로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광공업체로
1 102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이러한 경우 생산을 위탁한 사업체
	에서 생산으로 조사됨)
	● 플라스틱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생산의 경우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제조업체에 중간단계 부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만을 조사
구입	• 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제품
~ IB	● 원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비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주문생산
	시켜 입고한 양(OEM생산 포함)
	• 외국에서 수입한 것
	• 이미 출고한 제품 중 반품된 것으로 재판매되거나 재고로 처리될 것
	●타 기업체로부터 빌려온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구입하거나 내부 거래로 받은 것

○ 재투입

- 제품의 원재료로 투입(순면사를 순면직물 생산을 위해 사용)
- 연료로 투입(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
- 촉매제 또는 환원제로 투입
- 다른 제품의 가공을 위해 투입
 - ※ 금액조사는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 출하실적

- •제품 출하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공장관할 밖의 외부로 출고함을 의미
 - 단순히 보관만을 위하여 공장내 창고, 타 지역에 있는 자기창고나 타인창고로 이송된 것은 출하가 아니며
 - 대금을 받았더라도 공장 밖으로 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된 것이 아님
- 조사대상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출하로 조사(단, 구입분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출하 에서 제외)
- 위탁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수탁업체에서 직접 출고되는 경우 위 탁생산업체에서 출하로 조사
- 자체생산한 제품을 국내 판매업자,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 판매
 - 단, 수탁생산 제품을 위탁업체로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
- 판매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본사나 영업 소 등에 출하(단, 생산시설이 없는 본사에서 해당 제품을 가공 없이 외국으로 재 출하하는 경우는 수출로 조사)

- 내수 (국내시판)

- 내국신용장수출(Local수출) 중 국내의 타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수출용 완제품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
-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
 - 단, 그 제품을 인수하는 공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재료, 부품, 촉매 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조사
- •동일공장내 타산업(대분류)에 사용하는 경우
- 내수(국내시판)금액
 - 내수(국내시판)금액의 평가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된 생산자 판매가격(운임, 포장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이들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함
 - 수탁제품인 경우는 원재료비와 가공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조사

• 외국에 판매하기 위한 출하 및 북한으로 출하하는 경우 - 수출 • 주한 외국군에 출하 • 외국 또는 주한 외국군에 견본, 선물 등으로 증정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전시용으로 송부한 것 • SKD, CKD 방식에 의해 수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함(단, 자동차는 KD세트가 별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조사하여야 함) - SKD(Semi Knock Down) : 제품을 반해체 상태로 수출 - CKD(Complete Knock Down) : 제품을 완전해체하여 수출 • 국내에 있는 면세점에 납품 •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의 타공장으로 출하 - 동일기업내 •조사품목을 국내에 견본, 선물, 전시용 등으로 출하 타공장출하 • 자기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제품포장용 및 기타출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타사업체에서 빌려온 제품(조사품목과 동일품목)의 변제를 위해 출 하한 경우 •동일공장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제품의 생산을 위해 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부족 조정사유 ○ 과부족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분실(-) - 재고로 보관 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 - 계산단위 미만의 사사오입에 따른 증감(+, -) - 기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고의 증감(+, -) •출하누락 등으로 인한 차이는 과부족처리가 아닌 보정시 반영하 여야 함. 특히 연간조사 통합실시와 관련 일치를 위한 노력 필요 • 생산, 출하, 재고와의 관계 월말재고(조사표 I) = 전월말재고(월초재고)+생산(자체생산+위탁생 산)+구입-재투입-출하(내수+수출+타공장출하 및 기타출하)±과부족 • 매월말 현재 조사대상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체 생산제품 및 ○ 월말재고 위탁 생산제품 - 타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1기업 1사업체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 창 고는 공장 창고로 간주

• 현금 또는 외상판매 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 (단,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수탁업체에서 보관중인 것도 재고에 포함됨 •조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것 - 외부구입의 경우 자체생산분과 구분이 가능하면 제외 • 금액조사는 실제 재고액을 기입 • 본 항목은 업종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각 항목별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 전월대비 ±30% 이상의 물량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 대기업체의 경우 혹은 가중치가 높은 품목의 경우는 ±30% 미만이라도 증감 ○ 비고사항 내역을 파악 기입 요망 - 과부족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특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전월에 비해 생산, 구입, 내수, 수출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등의 실 적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비고사항에 증감사유를 기입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칭이 조사대상 품목명과 다르더라도 지정 ▶ 주의사항 품목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조사함에 유의 문 1) 한 사업체에서 자연치즈와 가공치즈를 동시에 생산할 때 재투입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만일 자연치즈 생산량은 총 100중에서 가공치즈 생산을 위해 사용된 30을 제외한 70이 되며 가공치즈생산량 50을 더하여 총생산은 120이 됨 자연치즈와 가공치즈가 같은 품목개념이므로 재투입으로 조 사례 사하지 않아야 함 전월말 동일품목의 월 말 생 산 줄 하 재 고 원재료로 사용 재 고 자연치즈 100 60 30 20 30 가 공 치 즈 0 50 0 40 10 조사표 작성 20 120 0 100 40

문 2)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는 경우는?

⇒ 내수(국내시판)로 조사함. 단, 이 경우에도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내수(국내시판)가 아니라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

참고-1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 입력방법

□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함(반올림해도 '0'이 되는 경우는 몇 개월간의 누계량을 반올림하여 '1'이 되는 월에 수량을 '1'로 조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생산량	0.4	0.4	0.4	0.2	1.1	0.3
누계량	0.4	0.8	1.2	1.4	2.5	2.8
조사표	0	1	0	0	2	0

참고-2 생산을 자체, 위탁, 수탁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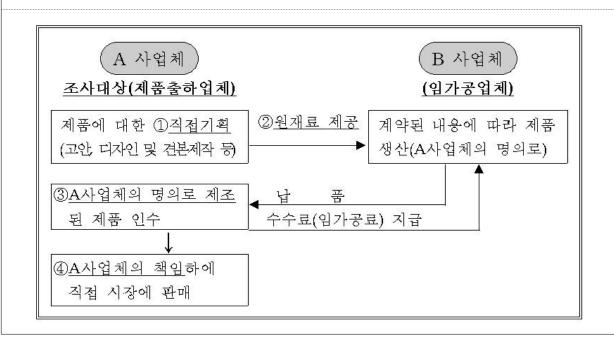
- ▶ 생산이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에서 이중 조사되는 것을 방지
- □ 위탁업체를 생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탁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의 생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지역지수, GRDP 산정시 중요)

참고-3 위·수탁관계가 성립하려면

- ▶ 위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 원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 □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야 함

참고-4 자체생산 조사시 유의사항(4대 조건)

- 생산(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아래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사업체이며, 자체생산으로 조사
 - ① 자체디자인실, 상품기획실 등을 통하여 제품 기획을 함(직접 기획)
 - ②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자신이 모두 구입하여 수탁사업체에게 제공하거 나 원재료 사양서를 수탁업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위탁업자가 지불함(원재료 제공)
 - ③ 독점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자기명의(공동명의)로 상표법에 등록된 고유 상표(유명상표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포함) 만 해당되고 위장상표는 제외됨(자기 명의)
 - ④ 위탁업체가 수탁 제조된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 판매망 확보, 판매전략 수립 등으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자기책임 시장판매)
 - ※ 소사장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체의 처리방법
 - 생산라인만 소사장으로 분리, 운영: 전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생산물량 파악
 - 생산과 판매가 완전 분리: 소사장업체를 각각의 사업체로 파악하여 자체 생산, 위·수탁 여부 등을 파악



참고-5 구입조사시 유의사항

- □ 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이 생산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 하여 조사됨
- ☑ 조사표 I 은 「외부구입」과「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을 합하여「구입」란에 기입
- □ 외부구입 물량을 출하, 재고 조사단계에서 모두 파악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구입량을 제외하고 조사(단,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은 자체생산과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구입으로 조사)
-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과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구입이 있는 경우만 조사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품목을 원재료나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 구입 금액의 평가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한 구입가격으로 함
 - ☞ 주의: 다음 사항은 구입으로 조사해서는 안됨
 - 반품된 제품 중 폐기될 제품
 - •보유 물량이 부족하여 자사 직매장에서 이미 출하된 제품을 회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을 경우
 - 단순 수선가공, 처리 등을 거친 후 반품처에 재 출고될 제품
 - 해체되어 생산 공정에 재투입될 제품

참고-6 재투입 조사시 유의사항

- ♪ 출하와 구별하고, 생산-출하-재고의 함수관계 검증을 위한 조사항목임
-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이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생산 공정에 재투입된 양 및 금액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 공정에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사용된 제품 또는 위탁 생산업체에 원재료, 연료, 촉매제 등으로 제공한 제품
- ▼ 동일공장내에서 타산업(대분류)용으로 사용될 때는 내수로 조사함에 유의- (예) 육상금속구조물을 생산하여 동일공장내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
- □ 조사품목(예: 자연치즈)이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예: 가공치즈)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재투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초생산(자연치즈)에서 차감하고 최종제품(가공치즈)생산을 합하여 조사함에 유의

☞ 예를 들어

- 골판지를 생산하여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경우
- 생산한 커피로 커피믹스를 만드는 경우
 - ⇒ 커피믹스에서는 설탕과 커피크리머를 제외하여야 함

참고-7 수출유형

수출유형	수 출 방 법		사 법
자기명의 수 출	대상사업체가 외국관계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직접 수출	수	출
	대상사업체가 수출입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은 타업체를 통해 수출	수	출
타인명의 수 출	대상사업체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수출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을 공급(내국신용장 수출 : Local수출)	수	출
	대상사업체의 출하제품이 타사업체의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나 부품 으로 사용되어 수출되는 경우	국시	내 판

참고-8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유형별 처리내용

동일기업니	보내는 공장	받는 공장	
제품을 받는 공장에서	동일기업내	구입	
	(받는공장에서) 원재료로 사용	타공장출하	원재료 (조사대상외)
제품을 받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	(받는공장에서) 자기사용 국내로 재출하 외국에 재출하	내수 내수 수출	조사대상외

3) 품목별 수주량·진척량

※품 목	번 호	100		1		 2				3	T			4	
※ 苦 -	목 명														
※단	위														
당 월	국내용		1											-	
수 주 량	수출용							1							
당 월	국내용							- Inches							
진 척 량	수출용														
수주잔량	국내용								1			in the			1.65
十十 で で	수출용														
당 월	톤 수														
완성인도	척 (대)			and the											
비고	사 항	·													

▶ 기입방법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는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정보 를 입력(조사담당자) 단, ※의 경우에는 통계조사관이 기입
▶ 항목별 작성기준	
○ 품목번호 및 품목명	• 지정품목(품목번호 : 44400(해상금속구조물), 44809(원자로), 75200~75700(선박, 전동차))에 한해 조사표Ⅱ로 작성 ※ 지정품목 이외의 품목 중 장기공정으로 인해 진척률 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조사표Ⅰ을 사용하여야 함에 유의
단위	● 조사대상 품목별로 지정된 단위를 사용 ●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 CGT)는 선박의 "실질적인 작업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선종/선형별 공사량, 건조능력 산출, 수주, 건조, 수주잔량, 통계작성 등에 이용.이는 부가가치 수준에 따라 몇가지 선종 및 선형별로 Grouping하고 선박의 GT에 CGT도출을 위한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
○ 당월수주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 받은 량 • 국내수주량과 수출수주량으로 구분 기입 • G/T를 CGT로 환산 시 호선별(선박별)로 환산
○ 당월진척량	 수주량에 조사월의 공정진척률을 곱하여 환산하거나, 총수주량에 공정진척률 누계를 곱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빼고 계산 국내진척량과 수출진척량으로 구분 기입 G/T를 CGT로 환산 시 호선별(선박별)로 환산

수주잔량	• 총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뺀 잔량
1120	• 국내수주잔량과 수출수주잔량으로 구분 기입
	•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과의 관계
	- 당월말 수주잔량=전월말 수주잔량+당월수주량-당월진척량
	● G/T를 CGT로 환산 시 호선별(선박별)로 환산
○ 당월 완성품	• 공정 진척도(기성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선박 또는 전동차 등의 납
인도량	품량을 기입
	• 완성품 인도 톤수 및 척(대)로 구분 조사
	※원자로의 경우는 톤수 → MW, 척(대) → 호기로 기입

참고-1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의 CGT산출방식

공식 : $A \times GT^{AB}(A : 선종 영향요소, B : 선형 영향요소)$

< G/T를 CGT로 환산 사례(2007년 1월 OECD CGT 개정) >

선종	GT	A	В	CGT
화학제품운반선	150,000	84	0.55	59,038
크루즈선	150,000	49	0.67	143,939
벌커	150,000	29	0.61	41,669
어선	150,000	24	0.71	113,563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해설집 P.1277참조

4) 품목별 생산능력

※품 목 번 호	S	S	S
※품 목 명			
※단 위			
생 산 능 력			
주요설비보유수			
표준조업일수			
1일표준조업시간			
생산능력증감사유부호			
비 고 사 항			
	생산능력 증	감사유 부호	
1. 설비 증설/개선/교체 6. 표준조업일수 변동 2. 설비 폐기/매각 7. 1일표준조업시간 변동 3. 설비 노후화 8. 생산직 종사자수 변동 4. 설비 해외이전 9. 기타 5. 신기법 도입 또는 공정 개선			

▶ 기입방법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는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정보 를 입력(조사담당자) 단, ※의 경우에는 통계조사관이 기입
▶ 항목별	
작성기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능력 산정기준표」에 기재된 품목번호와 품목명을 기입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개념 및 포괄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대상이외의 품목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 품목번호 및 품목명	☑ (예) 정수기에 포함되는 냉온수기는 정수능력이 없는 단순냉 온수기를 제외하고 정수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을 조사
	• 생산능력 품목은 생산실적 부문 대상품목을 합산하여 조사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품목번호와 품목명이 다른점에 유의하여 기입
	□ (예) 생산실적 부문에서는 '소형냉장고', '중형냉장고',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를 각각 별도품목으로 조사하나 생산능력에서는 모두 포괄하여 '냉장고 (S23900)'로 조사
○ 단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능력 산정기준표」에 지정된 단위를 기입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여러 개의 생산실적 부문 대상품목을 합하여 한 개의 품목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품목별로 단위가 다르므로 지정단위 환산시 유의
	 □ (예) 생산능력 품목 방적사(S03500)는 생산실적 부문의 '면사', '소모사', '방모사', '합성섬유사', '커버링사'를 포괄하는데 이중 소모사와 커버링사의 조사단위는 Kg, 기타품목은 M/T이므로 소모사, 커버링사의 단위를 M/T 로 환산한 후에 합산
○ 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설비효율이 감안된 적정생산능력을 말하며, 사업체의 표준조업일수, 1일표준조업시간 및 단위시간당 설비의 능력 등을 생산능력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생산능력을 기입 - 생산능력 = 주요설비의 단위시간당 최대생산능력 × 설비효율 × 1일표준조업시간 × 표준조업일수

		 조립생산의 경우 조립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투입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직 종사자수를 감안하여 생산능력을 산정 ·조립능력은 설비능력과 작업능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결합비율은 사업체의 현실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이는일정기간 준고정적으로 유지됨
0	○ 주요설비 보유수	 조사대상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설비 또는 애로설비를 선정한 후 설비수를 기입 □ 주요설비 없이 조립라인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은 조립라인 수를 기입 □ 애로설비: 생산공정중 시간이 가장 지체되는 설비로 주요 설비를 대신 할 수 있음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전가능상태의 주요(애로)설비를 기준으로 설비보유수를 기입 □ 각 설비당 노후도가 다르고 생산능력이 다를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설비로 계상함 (단, 노후되어 사용불가능하거나 폐기 처리되어야 할 설비는 제외)
0	표준조업일수	• 표준조업일수는 생산능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체별 지정조업일 수로 정례적인 휴일을 제외한 계획된 연간조업일수를 12개월로 나는 일수를 기입
0	1일표준 조업시간	●1일표준조업시간은 생산능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체별 지정조업 시간으로 기본작업시간에 정규적인 잔업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입
0	생산능력 증감 사유 부호	● 생산능력이 전월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생산능력 증감사유 부호를 반드시 기입

● 생산능력, 주요설비보유수, 표준조업일수, 1일표준조업시간 등이 전월에 비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생산능력산정내역을 반드시 기입

■ 생산능력 증감사유부호 8. 생산직인원 변동일 경우 생산직 인원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예) 금월 생산직 150명 충원하여 100→250으로 증가

● 가동률이 40% 미만 또는 100%이상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입

5)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입

가 <u>동 클(</u> 택1)	□ 자체설비생산실적액 = 생산능력액 =	자체설비생산실* ∑생산능력수량×		백 만원) 백만원)	=(%)
		제총가동시간 총가동가능시간	=-{	시간/월) 시간/월)	=(%)
		총투입시간 총투입가능시간	= (<i>MH</i> /월) <i>MH</i> /월)	=(%)
	4기타()	= ()	=(%)
생산실적총액			(백만원)			
비고사항	2					

▶ 기입방법	● 해당 사업체의 자료를 선택 및 기입
	●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비율 - 생산능력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 인력, 가동 조건(일수 및 시간 등)하에서 최대 생산가능 실적
○ 가동률	• 사업체의 가동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아래의 4개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기준의 분모, 분자 값을 기입 ① 금액
	- 사업체 가동률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생산능력액(=∑ 생산능력수량 × 단가)대비 생산실적액의 비율 ② 설비대수
	- 주요 생산설비의 통상적인 가동가능 시간 대비 해당 월 가동시 간의 비율

	· 통상적인 가동시간은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수와 시간을 의미 · 설비별로 가동 일수 및 시간이 다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산
	③ 생산직종사자 Man-Hour - 1개월 동안의 통상적인 생산직 종사자의 작업공수(Man-Hour, MH) 대비 실제 투입된 MH의 비율 ④ 기타
	- ①~③에 해당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 생산실적총액	 해당 월 동안 생산된 모든 제품(완제품, 반제품 등)에 대하여 작성 생산실적총액=매출총액+월말 총재고액-월초 총재고액 모두 완제품일 경우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기준으로 평가 생산자판매가격 적용이 곤란할 경우 조사 시점의 출하단가 적용 ※ 생산실적총액은 가동률산정기준 중 분자부분(자체 설비생산실적액)과 다를 수 있음
○ 비고사항	• 가동률 증감 원인 및 산정 기준의 변경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
▶ 주의사항	 가동률의 산정기준은 시계열 유지의 일관성을 위해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기준으로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가동률 자료를 수집 가동률 조사 시 각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모와 분자를 반드시 기입 광업·제조업동향조사표 [과 조사표Ⅱ에 모두 작성하는 사업체의 경우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총액은 조사표 [에만 작성

6) 고용 및 조업상황

월	말 종	사 자	수	명
조	업	일	수	일
1 일	평 균	조 업 시	1간	시간
н	고	사	항	

▶ 기입방법	● 월말기준 해당 항목을 기입(명, 일, 시간)
▶ 항목별 작성기준	
○ 월말종사자수	 조사 대상월 월말기준의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와 용역, 도급, 소사장제 종사자의 총합 월말 종사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으로 조사(수시로 종사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 됨)
 조업일수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1개월(휴일 포함) 동안의「실제 공장가동일」을 의미 ※기계점검, 유지보수 등 실제 생산준비 활동은 포함하지 않고, 포장 활동은 생산 공정의 일부분으로 포함한다. ●1일 24시간인 경우도 교대횟수와 관계없이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사업체 사정 등으로 생산직종사자 일부만 조업한 경우라도 조업일수에 포함(단,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 1일평균 조업시간	•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 해당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 월중 조업일수
○ 비고사항	 사업체의 고용 및 조업과 관련한 특기사항 기입 인원 감축, 신규 채용 투입 등 설비 보수, 증설 등 조업일수 또는 조업시간 변동요인 기타 특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 주의사항	 사업체 종사자의 변동사항과 조업현황의 연관관계 회계나 경영이 독립되어 있는 본사의 종사자는 조사에서 제외하나, 본사가 대상사업체(공장)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포함 조사 용역, 도급, 소사장제의 인원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포함 조사

참고-1 고용 및 조업상황 조사시 유의사항

□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2종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조업상황은 사업 체의 주된 산업이 나타나는 조사표에만 기입

참고-2 종사자수 조사시 유의사항

- □ 급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는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퇴직한 종사자(상용 및 임시[일용포함])를 월말 종사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 휴업 및 기타 사유(폐업 제외)로 조업이 중단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조사- 휴업은 되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및 일시적 휴업(2개월까지)

참고-3 종사상 지위분류 및 개념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내 용
1.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11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121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122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 업자(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 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3.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 하는 사람
9	기타 종사자	○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독자적인 시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99 그 외 종사자	- 그 외 종사자

제3장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	Ē	63
/2 /	입력		72

제3장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가. 사전내용 검토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는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3조*』에 의해 사전내용검토를 해야함
 - * 제23조(사전내용검토)

 \bigcirc

(2)

- ① 현장조사 직원은 조사된 사항을 보고 또는 전송하기 전에 내용검토(이하 "사전 내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전내검은 조시를 담당한 직원이외에 다른 현장조사 직원 또는 조시팀장이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본청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현장조사 직원은 통계조사별 지침서 등에 의거 조사표에 증감요인을 기재하도록 한경우에는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전내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 실적 부문

조사대상업체를 조사누락 하거나 대상의 사업체를 조사

- ⇒ 대규모 조사대상업체가 창설되는 경우는 경제신문이나 지방 신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조사
- ⇒ 비제조업체(도소매업 등)가 제조업체 등에 하청을 주어 생산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아님에 유의

•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 착오

- ⇒ 원재료와 제품을 혼동하여 분류
 - 합성수지(20)와 플라스틱제품(22)
 - 합성섬유(20)와 합성섬유사(13)
 - 농약(20)과 농약원재(대상외)
- ⇒ 형태나 용도가 비슷한 품목간의 분류 착오
 - 벽지(17)와 플라스틱장판 및 벽지(22)
 - 플라스틱자동차부품(22)과 차체부품(30)
 - 금속박지(17)와 알루미늄박(24)

- ⇒ 사업체에서 품목별 분리조사가 어렵다고 한 품목에 포함 조사
 - 혼방섬유사 또는 직물
 - 자동차부품(자동차기관부품, 차체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 ⇒ 포괄범위가 같은 일부품목을 제외
 - 유산균 발효유에서 조사대상인 호상제품^{*}을 제외 * 유산균 발효유는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 발효유와 떠먹는 형태의 호상발효유로 나뉨
 - 경운기에 관리기를 제외하여 조사

• 품목확인 소홀(품목 누락)

- ③ ⇒ 생산하여 재투입되는 원재료가 지정품목인데 누락
 - ⇒ 신규 생산되는 제품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고 누락

• 동일기업내 공장간 중복 조사

- ④ ⇒ 본사와 함께 있는 공장에서 지방의 타공장분을 합산조사하고 지 방에 있는 공장에서도 중복 조사
 -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인수(구입)한 양을 생산량에 포함

● <u>위·수탁관계에서의 중복·누락</u>

⇒ 위탁생산량 또는 수탁생산량을 누락하여 조사

• 출하포착시점의 혼동

- ⇒ 염색, 도금 등 공정일부를 임가공하기 위해 단순 출고된 양을⑥ 출하로 조사
 - ⇒ 단순 보관을 위하여 타지역에 있는 창고에 이송된 것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

• 내수 및 수출의 착오

- 타사에 납품되어 수출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는경우를 수출로 조사
 - ⇒ 내수 및 수출 물량(금액)을 바꾸어 조사

내수와 타공장 출하 혼동

⑧ ⇒ 생산된 제품이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증축용으로 투입된 경우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착오 조사

• 재투입물량의 혼동 (9) ⇒ 생산된 제품이 동일공장내 타제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재투입으로 조사 ● 단위환산 착오 \Rightarrow 동일 특성의 단위를 잘못 적용($\ell \rightarrow k\ell$, kg $\rightarrow M/T$) (10)⇒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그대로 적용(프레스기 : 대→M/T) ⇒ 수량을 금액으로 조사 ● 잠정·확정치 간의 현격한 차이 ⇒ 잠정조사표 작성시 조사자 임의로 전월실적과 비교하여 (11)작성 ⇒ 전월 착오내용을 산업동향과에 통보 없이 조사자 임의로 수정 • 생산능력의 누락 또는 중복조사 생산 (1)⇒ 사업체 이전, 통합, 분할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중복조사되거나 능력 누락조사 부문 • 휴업사업체의 생산능력 누락 (2)⇒ 휴업중인 사업체의 생산능력을 0으로 잘못 기입하나 설비가 있을 경우 생산능력 계속 조사 • 생산능력 임의 변경 ⇒ 직접입력(CASI)사업체의 조사응답자의 생산능력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산능력 항목에 생산실적 입력 (3) ⇒ 가동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산실적을 감안하여 생산 능력 입력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 가동률의 산정기준의 잦은 변경
 - ⇒ 시계열 유지의 일관성을 위해 가능한 한 동일 기준으로 조사 해야 하지만, 좀 더 타당한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가동률 자료를 수집
- <u>가동률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모와 분자를 미입력</u>
 - ⇒ 가동률의 정확성 판단을 위해 반드시 조사

● 생산실적총액의 포괄범위 혼동

③ ⇒ 품목별 생산실적의 합을 생산실적 총액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생산실적총액은 생산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

나. 중점 및 수시검토 사항

ㅇ 광업제조업동향조사시 수시로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

중점 검토 사항

- 단위는 정확히 적용하였으며, 조사단위와 물량(금액)을 비교할 때 이상 한 점은 없는가? 주어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아 님에 유의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금월말재고』의 등식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과부족조정』사유가 생겼는가?
- 종사자수,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한 경우(또는 그 반대) 등 관련사항간에 문제는 없는가?
- 전월에 비해 생산, 출하, 재고의 증감폭이 큰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 생산능력 조사사업체의 생산능력을 재산정한 경우 비고란에 생산능력 재산정 사유와 능력산식을 기입하였는가?

	● 생산능력 조사사업체인 경우 1일표준조업시간(표준조업일수)을 당월 의 가동시간(일수)으로 기입하지 않았는가?
수시 검토 점검 사항	• 대상사업체에서 새로운 조사대상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사업체 응답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 생산능력 조사사업체인 경우 장기간 가동률이 40%미만이거나 100%이상 일 경우 설비보유수, 표준조업일수 등 생산능력 재산정 사유는 없는가?

다. 조사표 입력 점검 사항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력하되, 입력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동향과에 통보한 후 최대한 조기에 조사하여 조사표를 송부하 여야 함(능력대상 사업체는 능력담당자에게도 조사표 별도 송부)
-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이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또는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매월 입력(휴업의 경우도 동일)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입력하여야 함
- 품목별 물량이 전월에 비해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는 비고사항에 조사 항목별로 증감사유를 반드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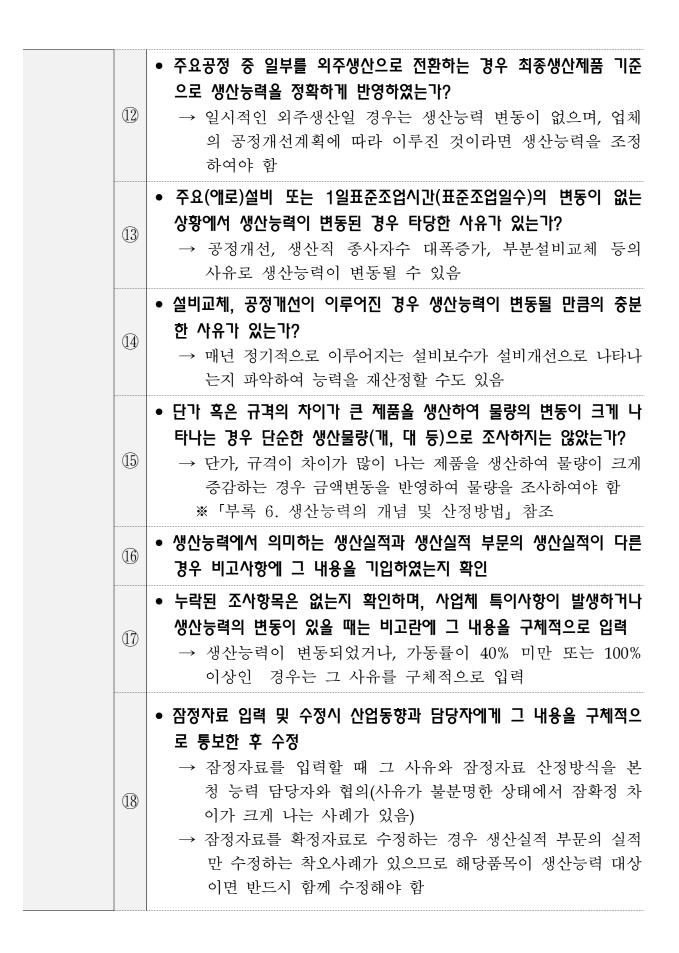
라. 인터넷조사(CASI) 사업체의 물량검토 및 유의사항

- CASI조사는 사무소와 사업체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수시 방문에 따른 응답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표 내용에 대한 검토 책임은 조사담당자에게 있음
- 평소 사업체 응답자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조사개념, 품목 개념 등)을 통해 조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또 새로운 품목의 생산이나 설비의 변동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
- 특히, 응답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품목의 포괄범위, 조사단위, 조사표의 각 항목(생산, 내수, 수출, 구입, 재투입, 타공장출하 및 기타출하, 재고)별 개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조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조사표가 접수되면 조사내용이 잠정자료인지, 전월에 비해 물량의 증감이
 큰지, 증감사유가 적절히 기입되었는지 등에 대해 유의하여 검토
- 잠정자료는 응답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가 많아 확정치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잠정치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 실제 조업내용에 근접하게 조사표가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함

마. 조사표 내검 요령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	1	 ◆ 수량 및 금액단위가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며, 특히 수량단위의 경우 지정단위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조사되었는가? → 확인하여 착오시는 정확한 수량단위로 환산
	2	● 사업체별 품목수는 전월과 같은가? 만약 추가된 품목이 있다면 품목 유고사항란에 부호1(신규생산), 6(조사누락)중 어느 한 부호가 기입 되었는가? → 확인하여 누락, 착오시는 정정
	3	● 물량통계를 위해 세분 조사되는 품목(품목번호 5자리 중 4번째 자리 가 "9"인 품목)은 정확하게 세분하여 조사되었는가? → 착오시 질의
	4	● 전월에 비하여 생산, 구입, 내수, 수출,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등의 실적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사유가 타당성이 있는가? → 타당성이 없다면 재확인하고, 있다면 「비고사항」에 증감사유 를 기입
	5	● 생산이 전월, 금월 모두 0이면서 『구입』란에 실적이 있는 품목이 있는가? → 확인하여 자체생산은 없고 구입만 있는 품목인 경우는 향후 생산계획을 파악한 후 생산계획이 없다면 조사 중지
	6	 전월에 재투입이 있었던 품목이 금월에 없어지는 경우 확인 → 조사착오 여부, 특수사정 등 확인
	7	 전월대비 재투입량이 ±30% 이상인데 생산량이 ±5%이내면 확인 → 조사착오 여부 검토
	8	 전월대비 월말재고 실적이 ±30%이상 증감한 경우 확인 → 조사착오 여부 검토
	9	• 조사표 I 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금월말재고』=『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계±과부족』 → 착오기입 여부 점검(특히 생산, 출하, 재고)
	10	• 조사표 II 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당월수주잔량』=『전월말수주잔량+당월수주량-당월진척량』 → 착오기입 여부 검토
	11)	● 금액조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되었는가? → 포함되었다면 재확인하여 제외

품목별 생산능력	1	● 인터넷을 통한 직접입력(CASI) 사업체의 물량이 제대로 입력되었는가? → 직접입력(CASI)사업체에서 미입력 및 입력에러가 많이 나타남
	2	● 위탁생산만 하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위탁생산만 하는 경우는 생산능력 조사 대상이 아님
	3	 품목번호와 품목단위는 정확하게 기입되었는가? → 생산실적 부문과 품목번호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생산실적 부문의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경우 단위환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4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되었거나, 표본에서 탈락된 사업체의 물량 이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인
	5	• 생산실적 부문에서 새롭게 확인된 품목이 있다면 생산능력 대상 품목 인지 확인
	6	• 다수의 생산실적 부문 품목을 하나의 생산능력 품목으로 통합조사하는 경우 누락된 생산실적 부문 품목은 없는지 확인
	7	• 일괄공정과정에서 재투입되는 품목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 생산실적 부문에서는 재투입되는 품목을 조사하지만 생산능력은 최 종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일괄공정의 중간단계에서 생산되어 동일공정에 전량 재투입되는 품목은 제외하여야 함
	8	 생산능력은 지침서상의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가? →「부록 6. 생산능력의 개념 및 산정방법」참조
	9	● 생산능력을 생산실적과 비교하여 볼 때 과소 혹은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았는가? → 장기간 가동률이 40%미만 또는 100%를 상회하는 경우 생산 능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토
	10	 설비보유수는 주요(애로)설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가? → 지침서상의 주요(애로)설비와 사업체 주요(애로)설비가 다를 경우 사업체 주요(애로)설비를 기준으로 작성 → 한 공정에 주요(애로)설비 지정이 어려운 경우 1개 라인으로 조사함
	11)	● 1일표준조업시간, 표준조업일수가 기준에 맞게 조사되었는가? → 1일표준조업시간(표준조업일수)이 아닌 실 가동시간(일수)을 기입하는 경우와 주문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시간(일수) 증가를 생산능력에 반영하는 착오조사 사례가 있음



	19	 제투입, 기타 사유로 생산실적 부문의 생산실적 물량이 생산능력에서 의미하는 생산실적과 다른 경우 반드시 생산능력 입력창의 생산실적 을 수정 → 품목연결코드에 따라 생산실적 부문의 생산실적이 자동 입력되므로 반드시 확인수정
	20	• 생산능력 변동이 있는 경우 조사표 하단의 증감사유에 해당되는 부호 를 입력
사업체 가동률	21)	● 가동률 산정기준 변경 시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비고란에 타당한 사유를 반드시 입력
및 생산실적	22	• 가동률이 100%를 넘거나 40%미만인 경우 → 가동률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모와 분자를 재검토
고용 및		• 월중 1일 평균 조업시간이 전월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한
조업상황	-	경우는 관련 사항을 확인

2. 입력

가. 입력에 관한 일반 사항

일반 사 항	1	 조사표 상단의 □□월분의 기입과, 잠정 및 확정자료 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2	 조사가 누락된 항목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항목이 추가되지는 않
	3	●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 입되었는가(파업, 설비보수 기간 및 사유, 설비증설 등) → 확인하여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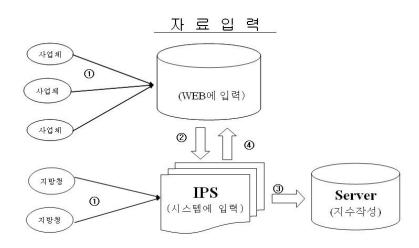
나. 직원용 입력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 (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의 구성
 - ① 사업체 관리 및 자료입력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대상사업체를 조사지역별로 구획하고 사업체변동사항,
 사업체품목의 대상여부 및 사업체담당자 변동 등을 지정하여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말함(사업체관리)
 - 사업체관리에서 지정된 사업체의 조사자료 입력 및 내용검토 기능(자료입력)
 - ② 자료관리
 - 인터넷을 통해 입력된 자료를 IPS로 통합하는 기능 및 입력자료를 가공 하기 위해 TXT파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는 기능
 - ③ 출력관리 및 기타
 - 명부 및 집계표 출력(출력관리)
 - 사업체별 담당자 설정
 - ** IPS = Industrial Production Survey
- (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의 특징
 - ① 프로그램의 특성
 - o ONLINE 입력방식
 - WEB 서버와 자료교환 기능
 - ㅇ 자동 업데이트 기능
 - ㅇ 내검처리 결과의 파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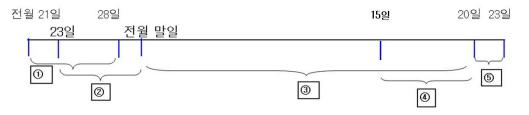
- ② 관리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은 크게 담당자관리단계, 지방통계청 (사무소) 관리단계 그리고 본청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 ㅇ 담당자 관리단계
 - 개별 사업체 및 사업체품목의 변동사항 파악
 - 담당자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사자료 입력 및 내용검토
- 지방통계청(사무소)관리 단계
 - 지방통계청(사무소)별로 파악된 사업체 및 사업체품목 변동사항 입력관리
 - 지방통계청(사무소)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사자료 입력현황 총괄
- 본청관리 단계
 - 전체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총괄
 - 전체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사자료 입력현황 총괄
- ※ 이하 지방통계청(사무소)는 지방통계청으로 호칭
- (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 자료처리 흐름
- ① 사업체관리 부분에 대한 자료처리
 - ① 담당자별 사업체 및 품목 변동사항 파악
 - ②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사업체 및 품목 변동 및 유고사항 입력
 - ③ 사업체관리 내역을 DB로 반영
- 당자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체 및 사업체별 품목 변동을 파악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사업체 주소 및 응답자 관련 내용을 입력
- 지방통계청 관리단계에서는 담당자 관리단계에서 파악된 산업분류, 종
 사자수 등 나머지 자료를 입력
- 본청 관리단계에서는 지방통계청에서 입력된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한 후 DB에 로드

② 자료입력 부분에 대한 자료처리 흐름



- ① 사업체 혹은 지방통계청의 조사담당자가 시스템에 자료 입력
- ② CASI에 입력된 자료를 IPS로 로드(CASI 자료 로드)
- ③ 입력자료 서버로 전송 및 지수 작성
- ④ IPS에 저장된 금월자료를 CASI 전월자료로 전환(월초작업)
- 담당자관리단계에서는 조사한 자료 및 사업체에서 직접 입력한 자료를 검 토 후 IPS로 로드 및 담당자별로 입력자료 내검실시
- 지방통계청 관리단계에서는 담당자 관리단계에서 입력된 자료를 총괄 내용검토

(라) 광업제조업동향조사(IPS) 업무일정



- ① 담당자별 사업체변동내용 등 파악(전월 21일 ~ 전월 28일 전후)
- ② 지방통계청 총괄담당자 시업체관리 내용 입력완료 (전월 23일~전월 말일 전후)
- ③ 사업체방문조사 및 Internet조사 동시 진행 (1~19일 전후)
- ④ 담당자별로 Internet 조사자료 내검, 자료 확정 및 로드 (15~19일 전후)
- (5) 지방통계청별로 Internet 사업체 자료 이외의 자료입력 완료 (~20일 까지)
- ⑥ 전국 자료의 집계, 내검, 지수산출, 확정(∼23일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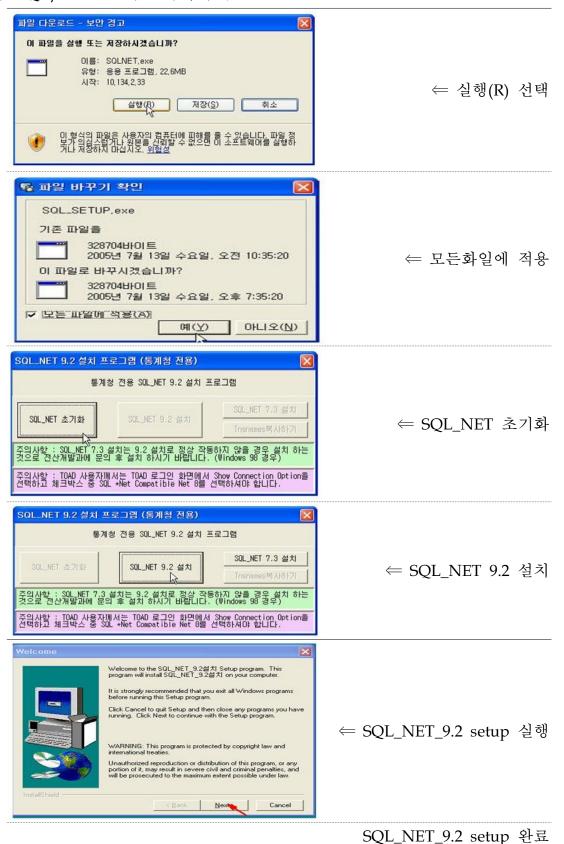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 설치 방법

- (가) 프로그램 설치 방법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은 GVPN(정부가상사설망) 입력시스템 으로 통계청 내부사이트를 이용해서 설치 가능함
- (나) 설치하기
- ① GVPN입력시스템 지원센터에 접속 (http://10.184.70.4/cs/total.html)



※ SQL/NET, Tnsname.ora, 광업제조업동향조사프로그램 순으로 설치

② SQL/NET 설치 : 따라하기



77

_

③ Tnsname.ora 설치 : 따라하기



Thorame.ora E | E2

< Tnsname.ora를 설치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 http://10.134.2.33/cs/total.html 을 참조하여 조치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청으로부터 TNSNAMES.ORA 파일을 송부받아 C:\ORAWIN95\NETWORK\ADMIN 폴더에 직접 저장, 혹은 업데이트한다.

④ 광업·제조업동향 입력프로그램 설치 : 따라하기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선택



← 설치파일 실행(R) 선택



⇐ 모든 파일에 적용

• steup 파일 수행



← 설치파일 실행(R) 선택





← 설치할 폴더
 (C:\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
 (C:\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프로그램 아이콘 위치 지정



← 설치완료를 위한 확인사항



⇐ 설치완료(Finish)

3)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 사용법

- (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 접속
- ① 처음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프로그램(IPS)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온 화면이 나타남



- 담당자 관리단계 ==> 담당자ID 및 패스워드를 입력
- 지방통계청 관리단계 ==> 지방통계청코드 2자리가 지방통계청ID이고 패스워드는 별도 지정
 - ※ 경인 ==>"AA" , 천안 ==>"EB" 등 2자리의 지방통계청ID로 사용
- 각 지방통계청에서는 반드시 지방통계청 관리단계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 지정된 총괄담당자는 개인 담당자ID외에 지방통계청ID를 가짐
- 지방통계청ID와 담당자ID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음(추후 설명) ※ 담당자ID 등 IPS에서 입력하는 영자(英子)는 대문자로 전환됨

- ※ 접속을 원치 않으면 종료 단추를 클릭(ESC 키는 안됨)
- ※ 담당자ID가 없거나 패스워드가 맞지 않는 경우



② 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 실시 : 로그인과 동시에 자동업데이트 내용이 팝업됨



다운로드하면 C:\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OUT폴더에 업데이트 내용이 저장됨

(나) 초기 메인화면

- 정상적인 접속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 ※ 엑셀서식에는 잠정자료 확정양식, 전전월자료 수정약식, 잠정지속 양식, 불응현황 작성양식을 "C:\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Out" 폴더로 다운로드 합니다



< 하위메뉴 소개 >

- ① 파일 : 종료
- ① 조사자료입력: 경상조사, CASI, CASI 자료로드

물량/사업체내검 및 조회, 생산능력내검조회, 자료체크

- ② 자료처리 : 유고집계출력물
- ③ 조회 및 출력: 사업체물량조회, 자료보관 및 복사, 명부 및 조사표 출력 사업체 및 자료입력 현황(물량, 지수분석 DOWN, 전월금월

자료집계)

- ④ 기본정보: 담당자 설정
- ⑤ 도움말: 품목해설, 의견사항
- ※ 괄호안의 메뉴는 지방통계청 관리단계에서만 조회/사용할 수 있으며, 각 메뉴들 의 기능도 관리단계별로 차이가 있음

(다) 업무흐름별 IPS 사용법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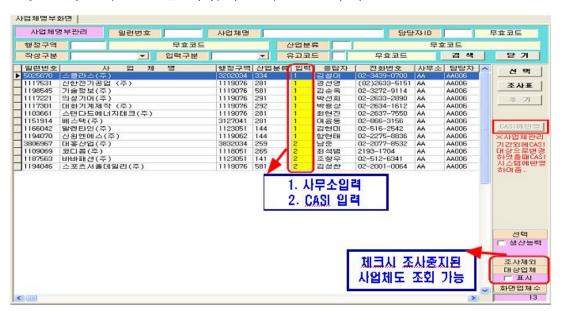
[조사자료입력(매월 1~20일): 담당자 관리단계]

① 경상조사

- 기본적으로 조사대상 전체가 조회됨
- 관심있는 필드명칭을 클릭하면 그 기준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됨

② 사업체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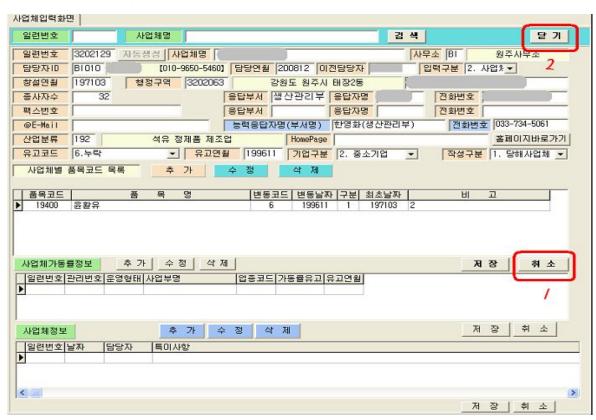
- "자료입력" 메뉴 중 "사업체명부"에서는 사업체 및 사업체품목의 관리는 물론 품목별 자료 입력 작업을 수행 함. 이때 나타나는 사업체는 관리단계에 따라 담당자 관리단계는 해당담당자의 사업체만을, 지방통계청 관리단계는 관할 사업체 모두를 표시 함



- 일련번호 혹은 사업체명칭 입력으로 특정 사업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필드 의 일부를 입력하여도 그것으로 시작되는 사업체들을 조회 가능
- 검색기능은 사업체정보 일부를 입력하여 해당되는 사업체를 검색하는 것으로 검색조건을 여러 개 입력한 경우에는 AND 조건으로 검색하게 되어 있음.
 - 예) "본사사무실" 작성이면서 산업중분류 "C26"에 해당하는 사업체 조회



- 사업체를 더블클릭하면 조사대상품목이 조회됨
 - ※ 모든 사업체를 보고자 할 때에는 검색조건을 모두 삭제한 후에 "검색" 단추를 클릭
- "선택"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사업체 및 품목정보가 담긴 새 창이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취소" 클릭으로 수정모드를 해제한 후 "닫기" 를 클릭하면 사업체 명부 화면으로 돌아감

③ 자료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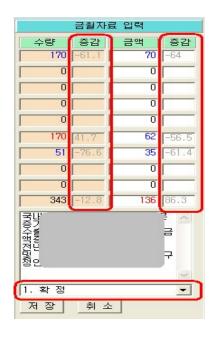
- "조사표"를 클릭



- ① 전체화면에 전월자료와 금월자료가 동시에 나타남
- ② 입력할 품목의 선택은 왼쪽의 품목을 선택함으로써 품목자료가 바뀜
- ③ 현재 입력하고 있는 조사표의 색은 파란색으로 표시
- ④ 고용 및 조업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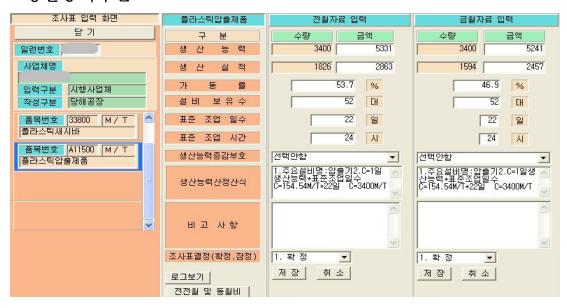


- ① 자료를 입력하려면 입력할 자료의 필드명을 클릭해야 함
- ② 입력할 품목의 지수단위는 조사표 품목번호 우측에 표기되며 병행단위는 입력부분에서 지수단위와 별도로 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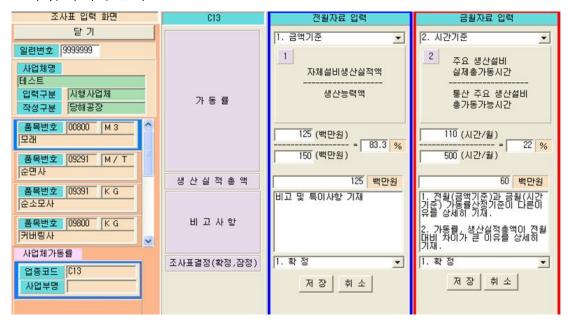
- ① 전전월대비 전월값, 전월대비 금월값을 증감을 의미하며 ±30% 이상인 경우 사 유를 비고사항에 기입하여야 저장됨
- ② 조사표 잠확정은 "확정"이 기본값
- ③ 입력후 항목별로 "저장" 또는 "취소"단추 를 클릭하여 저장 또는 취소 기능 수행 후 닫기

※ 생산능력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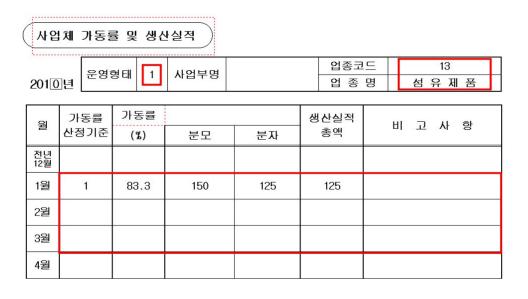


- 조사표가 완성되면 "닫기" 버튼 클릭

※ 사업체가동률부문



- 생산실적, 품목별 생산능력 입력방법과 동일
- 전월과 가동률산정기준이 변경됐을 경우 또는 전월대비 가동률, 생산 실적총액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비고사항에 사유 입력
- ④ 사업체가동률부문 기록부 정리
 - 운영형태가 1 또는 3일 경우 사업부명 공란
 - 업종코드 및 업종명은 IPS 사업체가동률정보와 동일하게 기재



- 운영형태가 2인 경우 사업부명 반드시 기재
- 가동률산정기준 변경, 증감사유 등을 비고사항에 세밀히 기재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2010	운영 형	경형태 2 사업부명		전기전자		업종코드 업 종 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월	가동률 산정기준	가동률	НП	ыл		산실적 총액		비고	사	항
전년 12월	연장기단	(%)	분모	분자	•	о ¬ 				
1월	2	77.1	240	185	1	1250				
2월					G					
3월										
4월										

- 운영형태 변경 및 가동률 유고발생 시 변동내역 기록
- 담당자 변경시 후임자에게 사업체가동률정보 변동내역을 인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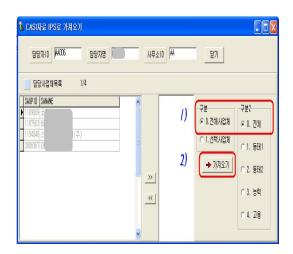
운영 형태	사업부명	업종 코드	업종명	가동률 유고	유고 연월	비고 사 항	
1		28	전기장비	1	201001	사업체가동률 조사시작	
1		28	전기장비	Е	201003	사업부제로 운영형태 변경	
2	가전제품	28	전기전자	1	201003	가전제품사업부 신규	
2	에어컨	29	기계장비	1	201003	에어컨사업부 신규	

- ※ 2010년 1월 사업체가동률 조사시작(운영형태 1 "단독")
- ※ 2010년 3월 사업부제로 바뀌면서 "단독" 운영형태변경중지

④ CASI 자료 로드

- 인터넷(CASI)으로 사업체 응답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로드하는 기능 사업체의 전월, 금월 최종 입력값을 불러오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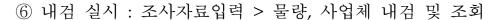


- ① 전체 사업체 및 전체 항목을 선택(일부만 로드하는 것도 가능)
- ② "가져오기" 클릭

⑤ 미입력사업체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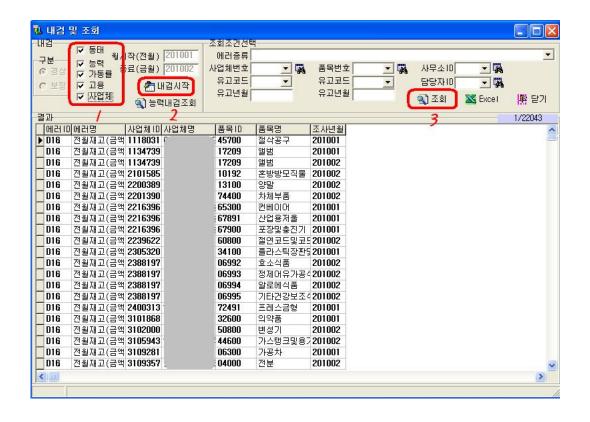
- 사업체명부화면에서 푸른색 음영처리로 조회 가능







- 체크박스 모두에 체크하고 내검시작 클릭(일부만 내검도 가능)
-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검결과가 조회됨
- => 특이사항이 있으면 확인 수정
- 엑셀로 다운받으면 C:\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OUT 폴더에 저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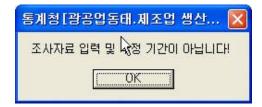


[지방통계청별 자료 내검(매월 19, 20일경): 지방통계청 관리단계]

① 지방통계청 총괄담당자는 담당자별 미입력품목수 및 입력률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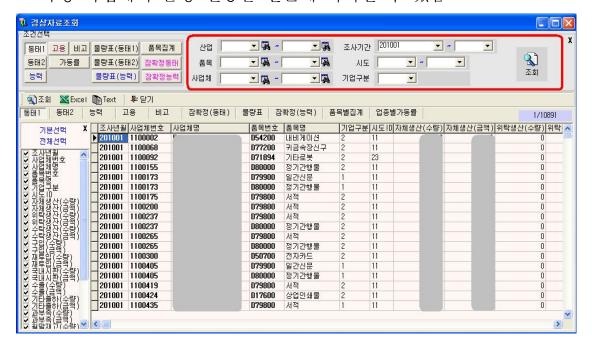


- 조회 및 출력 > 사업체 및 자료입력 현황
- ② 내검 및 조회 실시로 담당자별 사업체별 증감 확인
 - 조사표 입력 마감이후 조사표 수정, 저장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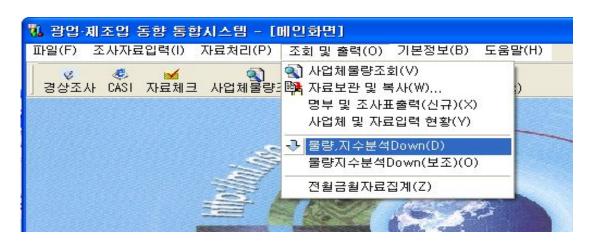


[지역 자료 관리(지수 확정 후 매월 24일~): 지방통계청 관리단계]

- ① 물량 조회
 - 콤보상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입력후 "조회" 버튼을 클릭
 - 특정 사업체의 물량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 ② 물량, 지수 분석자료 다운로드(지방통계청)
 - 물량 및 지수자료는 C:\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OUT 폴더에 저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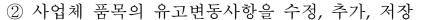
※ 물량,지수분석 자료가 다운이 안될경우 (보조)를 이용(기능은 동일함)

[사업체관리(지방통계청 관리단계 매월 24일이후~말일)]

- ① 사업체의 유고변동사항을 수정, 추가, 저장
 - 명부화면에서 사업체를 선택하면 기본값으로 수정모드



- 사업체일련번호 항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체명으로 최초 이동 함. 박스간 이동은 엔터키나 Tab키 또는 마우스로 이동할 수 있음
- 지방통계청코드를 입력하면 지방통계청명은 자동 참조되어 나타 남. 입력한 코드 가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무효코드"라는 글자가 나타남
- 일부 항목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리스트박스로 처리되어 있으니 알맞은 부호 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됨
- ※ 여기서도 "닫기" 단추를 사용하려면 "저장" 또는 "취소"키를 먼저 클릭 한 후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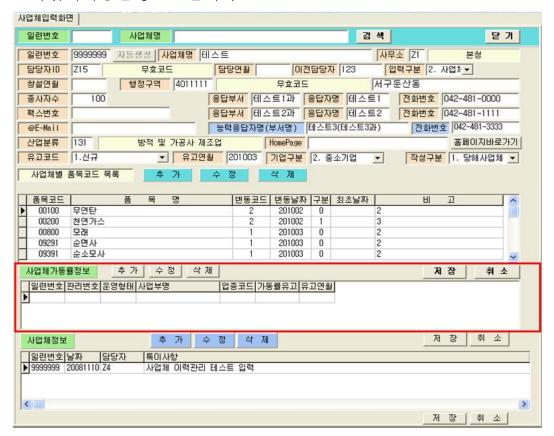




- ➡ 추가 및 수정기능에서 품목코드 및 모든 항목의 누락이 없게 수정 입력하고 사업체 유고 처리시(폐업, 대상외) 품목 유고는 자동 코딩 처리됨
 - 조사표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조사제외 필드를 "조사취소"로 변경하여야 함
 - 여기서도 품목코드가 없는 코드는 무효코드로 표시 됨
 - 기타 리스트박스 설정후 저장하면 됨

③ 사업체가동률 정보

- "사업체가동률정보" 관리화면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가동률 정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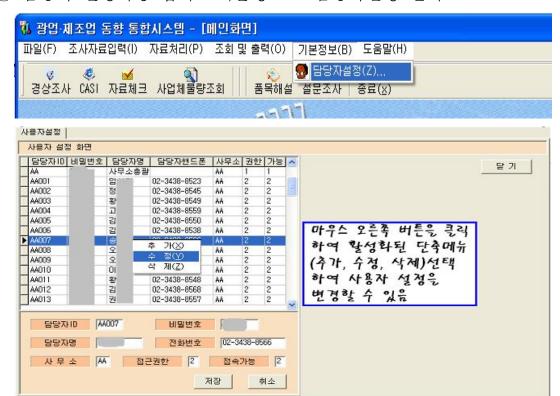


- "추가" 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가동률 정보를 관리함
- 운영형태가 사업부인 경우 사업부명을 반드시 입력
- 업종코드는 기본적으로 2자리(중분류)까지 입력하나, 26 업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은 3자리(소분류)까지 입력함에 유의
- 운영형태가 『단독 =>사업부형태로 변경』 또는 『사업부가 추가』 된 경우 사업체가동률 추가 ·화면에서 '수정'이 아닌 '추가'임에 유의(이력 누적)



가동률유고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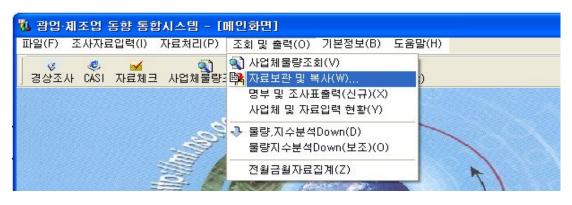
- 1. 신규 / 2. 폐업 / 3. 휴업 / 4. 전입 / 5. 전출 / 6. 누락
- 7. 관할신규 / 8. 관할해소 / 9. 타산업 대상외 / 0. 사업체합병
- A. 재가동 / B. 4대조건 대상외 / C. 사업부신규 / D. 사업부폐지
- E. 운영형태변경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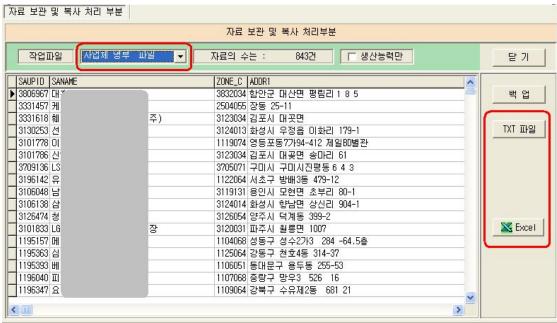


④ 담당자 변경사항 입력: 기본정보 > 담당자설정 선택

- 담당자설정은 해당지방통계청 내의 모든 담당자 정보가 표시 됨
- 담당자정보로는 담당자ID, 비밀번호,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지방통계청, 권한,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추가" 메뉴를 선택하여 담당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다른 정보도 함께 추가하면 됨
- 담당자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되는 지방통계청 전화번호를 입력. 이것은 인터넷통계조사표(CASI)에서 "담당자연락처"에 표시 됨
- 접근권한 1: 지방통계청 관리단계 2: 담당자 관리단계
- 접속가능 1: 접속가능 2: 접속불가능
- 입력항목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날 소지가 있으니 정확히 확인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하여야 함
- "수정", "삭제"도 담당자 변동에 따라 관리(특히 업무분장 후 관리 철저)
- 입력박스 이동은 엔터키, Tab키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면 됨
- "수정"메뉴라도 담당자ID는 수정할 수 없음
- "닫기"메뉴는 먼저 "저장"이나 "취소"단추를 클릭하고 나서야 클릭 가능

[명부 다운로드(매월 월초작업 후 : 매월 초)]





• 작업파일의 종류를 선택하여(리스트박스) 사업체명부, 사업체품목명부, 조사표 등을 다운로드(txt, xls)받을 수 있음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인터넷조사*)

- 인터넷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 응답자가 조사표에 입력하는 조사임
- 인터넷보급이 대중화되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인터넷이 접속 가능하므로 방문 조사를 대체할 최신 통계조사 방식임
- 시스템구성은 본청에 있는 인터넷 서버에 조사표 양식의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사업체에서 입력한 자료를 축적하여 DB화하는 것으로써 완성
 - * CASI =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ing
- 1) 인터넷조사표 접속
 - 인터넷 조사표 주소 : 주소창에 <u>http://mi.nso.go.kr</u> 입력

2) 초기화면

○ 위의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화면이 표시됨



① Login

- USER **ID :** 사업체 관리상의 **사업체일련번호**를 사용
- PASSWORD : 최초 접속시 사업체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보안을 위해 비밀보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 테스트사업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CASI 입력요령 설명 등에 활용(아이디: 9999999, 패스워드: 9999999)
- 사업체별 로그인(Login) 수행은 응답자가 어느 사업체를 입력할 것 인가에 대한 조사대상을 검색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입력한 통계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한 절차임
- 응답자는 인터넷 조사표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한 사업체만을 입력 및 자료를 볼 수 있음

②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변경" 을 클릭한 후 변경창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 사업체 ID 및 비밀번호 분실시
 - 지방통계청 조사담당자ID로 로그인(ID/비밀번호는 IPS와 동일)
 - "사업체비밀번호 초기화" 클릭



- 담당자 ID와 비밀번호, 사업체ID를 2번 입력후 저장



※ 사업체 비밀번호가 사업체ID와 동일하게 변경됨

③ 입력방법 설명 등

- 광공업동향조사 목적, 연혁, 대상 및 범위, 조사항목 등 내용
- 조사항목별 입력요령 설명
- 조사표입력이 안될 경우 처리 및 문의사항 수록

3) 인터넷 조사표 입력

○ 정상적인 로그인을 하면 해당 사업체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조사표 양식의 새창이 열리고 **사업체 및 품목정보와 전월자료, 금월자료 등도 함께 표시됨**



- ① 사업체와 조사담당자 정보
 - 사업체ID, 사업체명, 주소 등 사업체 정보와 조사담당자, 담당자연락처, 지방통계청명이 표시

② 품목정보

- 해당사업체의 조사품목이 나타나며 품목수만큼 위치가 아래로 늘어나게 되어 있음
- 사업체 및 품목 정보는 조사담당자가 IPS에서 사업체관리한 내용과 동일 하게 나타나므로 정보의 수정, 삭제 및 추가는 불가함

③ 자료입력

- 해당항목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마우스를 옮겨 다른 자리로 이동 하면서 입력하면 됨. **자료수정은 금월자료뿐만 아니라 전월 자료도 수정** 가능하니 사업체담당자는 전월 자료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사업체응답자가 전월자료를 수정하였는지 확인할 것

- 입력자료는 기본적으로 확정으로 지정되나 리스트박스의 선택으로 변경 가능
- 입력할 품목을 변경하려면 좌측의 품목명을 선택하면 되며, 조사표 양식은 조사표 종류에 따라 변경되고 품목 및 고용상황도 품목과 유사한 입력창 의 형태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자료를 입력하고 다음 품목으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을 클릭해야 저장이 되며, 자료입력을 끝내기 전에도 저장 단추를 꼭 클릭하여야 함

④ 전전월자료 조회

- 기본값으로 전월, 금월 조사표만 조회되나 "전전월 보기"를 선택하면 전 전월자료가 조회됨(편집은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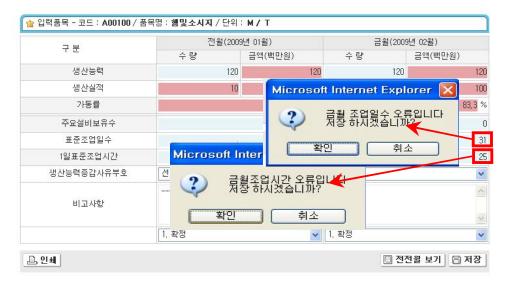
< 전전월자료 조회 화면 >

4) 입력자료 오류 내검

○ 인터넷 조사표에 입력된 자료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항목기준에 따라 그 값이 제한되어 있거나 저장시 내검(함수관계)과정을 거치게 됨

(가) 입력값 제한

- 광업·제조업동향 조사표 I, II의 품목 입력사항은 7자리로 제한되어 있음 (생산, 수출은 8자리)
 - 과부족항목은 (-)기호를 포함할 수 있음
 - 생산실적 부문 여러 개가 생산능력 부문 한 개 품목으로 합쳐져 저장될 때 7자리가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ㅇ 생산능력 부문
 - 표준조업일수 30 이하, 1일표준조업시간 24 이하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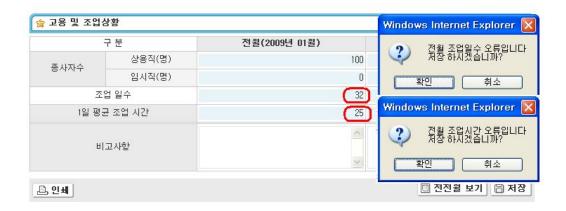
- 전월과 비교하여 표준조업일수와, 1일표준조업시간이 다를 경우 재확인 하도록 메시지 제공



- 고용 및 조업상황
 - 고용 및 조업상황 조사표 에 포함항목인 조업상황 조업일수 31 이하 조업시간 24 이하로 한정
- 그러나 입력값이 제한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도 함수관계 내검과 비슷한 내 검절차를 거치며 아래와 같이 오류메시지를 보여 줌



- 당연히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전월뿐만 아니라 금월에 대해서도 나타나며, 오 류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하여 수정 입력



0 비고사항

- 비고사항의 내용입력은 제한이 없고 저장시에 오류도 보여 주지 않으나 저장용량은 영문 200자, 한글 **100자까지만 제한적으로 저장됨**
- 입력값 제한과 함수관계 오류의 차이점은 입력값 제한은 입력이나 저장이 전혀 불가능 하지만 함수관계 오류는 입력 가능하며 오류메시지를 무시하고 저장할 수 있음

(나) 증감률 확인

- ① 자료입력 후 하단의 "증감률계산" 선택
- 전전월대비 전월, 전월대비 금월비를 조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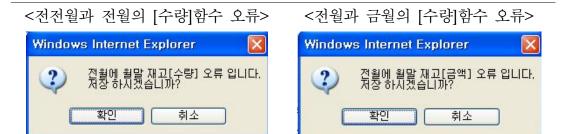
- ② ±30% 이상의 경우 비고사유를 입력하도록 메시지 제공
- 비고 미입력시 저장이 진행되지 않음

(다) 함수관계체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품목 함수 관계 내검

강업·제조업동향 조사표 I의 함수관계 >
 전월재고 + 생산 + 구입 - 재투입 - 출하 ± 과부족 = 금월재고

특이한 사유로 이와 같은 함수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저장단추를 눌러 저장을 시도하면 아래와 같이 함수관계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 오류 메시지를 보여 줌



- 응답자는 이 때 함수관계오류를 무시한다면 확인단추를, 수정을 원한다면 취소단 추를 선택하여 클릭 할 수 있음
- 확인 단추를 선택하면 함수관계가 맞지 않은 현재 값들을 그대로 저장하게 되고 취소 단추를 누르면 편집상태로 돌아감
- 함수관계 오류를 모두 수정한 후에 다시 저장단추를 눌러 저장하면 되며, 함수관계 가 틀린 상태에서 확인단추를 선택해 저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저장 단 추를 다시 누르면 함수관계 내검이 다시 시작되어 오류 메시지를 다시 표시함
- 광업제조업동향 조사표 II도 수주량, 진척량 및 수주잔량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래 와 같은 함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강업·제조업동향 조사표 II의 함수관계 >전월 수주잔량 + 당월수주량 - 당월진척량 = 당월수주잔량

○ 끝으로 아래와 같은 저장완료 표시로 저장이 종료 되며, 로그아웃 혹은 창닫기 버튼을 이용

8) 저장 및 종료

- 인터넷의 창들은 열린 화면이 닫힘과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저장기능을 실행하지 않은 작업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됨
- 또한 품목의 이동시에도 반드시 저장한 후에 다음 품목입력창으로 이동하여야 함
- 저장 단추를 누르면 지정된 내검이 모두 끝난 후에 자료가 저장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저장과정을 마치고 종료해야 한다는 것임
- 로그아웃 혹은 창닫기 버튼 이용

〈부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111
/2/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112
/3/ 조사용어 해설	121
/4/ 조사표 견본	124
/5/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	125
/6/ 생산능력의 개념 및 산정방법	126
/7/ 사업체가동률의 개념 및 산정예시	138
/8/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부문 품목비교표	141
/9/ 과태료부과 관련 서식	162

부 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가. 2009년 4월

	변경 전	변경 후			
지침서 통합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지침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지침서			
종사자수의 개념변경	• 조사업체의 종사자 - 상용 및 임시(일용포함)	• 종사자 단일 항목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종사자와 파견 받은 종사자(용역, 도급, 소사장제)			
주요 용어 변경	 광공업동태조사 행정구역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산업생산지수 설립년월 담당년월 유고년월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행정구역분류번호 •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내용추가 • 광공업생산지수 • 창설연월 • 담당연월 • 유고연월			
조직변경에	• 지방청, 사무소 및 출장소	• 지방통계청(사무소)			
따른 변경	• 구 지방청코드	• 신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코드			
지침서		• 조사 착오 유형 및 사례연구			
사례내용 보강		내용 보강			

나. 2010년 3월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체가동률		항목 추가에 따른 지침 수록
및 생산실적		
	품목별 생산실적 조사대상 품목 중 연간 출하액이 가장 큰 산업소분류	

2.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가. 주요 사항별 Q&A

사례 1 : 카오디오(D55200)에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생산되고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방법은?

- ⇒ 주기능인 카오디오(D55200)에 포함조사
- ⇒ 주(기본)기능 구분이 가능하면 주(기본)기능 품목으로 조사하고 주(기본)
 기능 구분이 불명확하면 기능을 구성하는 금액비중이 큰 부분을 주(기본)
 기능으로 하여 조사하되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과 협의 후 결정

사례 2 : MP3플레이어(D55300)가 고유기능 이외에 복합기능(라디오, 동영상, MP4 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조사방법은?

⇒ MP3플레이어 고유기능이외에 복합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MP3플레이어 (D55300)로 조사

사례 3 : 휴대용전화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스포츠 활동의 거리측정, 고도측정, MP3, DMB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조사방법은?

⇒ 휴대전화기 기능이 기본 기능이라면 다른 부가기능이 있어도 휴대용 전 화기로 조사

사례 4 : 카오디오를 완제품이 아닌 해제상태로 출하하는데 출하 후 간단한 조립작업을 거치 면 완제품이 될 경우 카오디오로 조사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완제품을 조사하나 이 경우 기존 조사대상 품목으로 조사되고 있는지, 지수시계열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중분류 담당과 협의

사례 5 : 000(주)에서는 쌀 저장 용도의 냉장고가 생산되는데 냉장고 중 어떤 품목으로 조사해야 맞는지?

⇒ 각종 김치류, 음식물(반찬, 쌀 등)을 저장하는 냉장고는 용량에 관계없이 김치냉장고(62200)에 포함조사

사례 6 : 수출업체의 경우 환율변동이 심하여 수출일자별 환율적용이 어려운 경우 수출금액 조사방법은?

⇒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조사

사례 7 : 대학 기숙사용 2층 침대의 조사대상 역부 및 조사방법은?

- ⇒ 목재침대인 경우만 조사대상
- ⇒ 수량은 매트리스가 아닌 프레임(틀)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2층 침대인 경 우도 1개로 조사

사례 8 : 000(주)의 경우 실적증감률이 30%미만인데도 중분류 담당자가 자주 질의해오는데 비고사항을 기입해야 하는지?

- ⇒ 증감률이 30%이상인 경우 반드시 비고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증감률이 30%미만이나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업종별 증감요인 분석을 위하여 세부사항이 필요
- ⇒ 업종 또는 품목별 대표도가 있는 경우 비고사항 기입필요
- ⇒ 동월비 증감이 큰 경우에도 증감내역 기입필요

아례 9 : 000(주)는 남녀용 단화를 생산하여 제품의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 직영매장 으로 출하시 국내매장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조사방법은?

- ⇒ 직영매장의 창고에 보관된 재고의 경우 일단 공장에서 출하된 물량은 유 통재고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재고가 아님
- ⇒ 단, 직영매장이 아닌 1기업 1사업체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창고는 공장창고로 간주하여 재고로 조사

사례 10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확한 재고파악을 위해 연말 재고 조사한 물량이 광업·제조업동 향조사 재고 물량과 차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 기존 조사된 재고 물량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과부족 처리할 수 있으나 차이가 클 경우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사례 11 : 000공장에서 제조하는 형강, 철근을 △ △공장의 증설을 위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조사방법은?

- ⇒ 000공장을 조사하는 담당자는 타공장으로 출하될 경우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 ⇒ 형강, 철근이 △△공장의 건설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타산업(건설업, 대분류)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000공장에서는 국내시판으로 처리하며 △△ 공장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사례 12 :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여 생산단가 차이가 심한 경우 처리 방법은?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생산은 제조원가나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재확인

사례 13 : 경강선(D40600)과 왁이어로프(D46200)를 제조하는 000(주)에서 경강선을 생산하여 이를 왁이어로프 제작에 사용할 경우 조사방법은?

⇒ 경강선과 와이어로프는 각각 별개의 완제품으로 경강선을 생산하여 와이 어로프 생산에 바로 투입되더라도 경강선 생산물량에 포함 조사하고 투 입된 물량을 재투입으로 조사

사례 14 : 현재 휴업사업체인데 폐업예정으로 재고물량 처리는 동일기업의 A계열사로 넘기는데 이에 대한 조사방법은?

⇒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및 기타출하로 처리(단 동일지역의 경우 재고만 이동)

사례 15 : 000(주)에서는 의약품 원재료를 구입하여 캡슐에 충전 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당 의약품을 생산품목에 포함 조사하여야 하는지?

⇒ 의약품 원재료를 구입하여 캡슐에 충전하는 경우 단순 임가공으로 조사 대상 품목에서 제외

나. 사업체관리

- 사례 1: ○ 주) 부산공장은 조사대상 품목 중 혼합음료의 생산시설을 여주공장으로 이전시키면서 혼합음료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약 6개월분의 재고물량은 그대로 부산공장에 남아 있다. 이 경우 사업체관리 및 재고물량의 처리는?
- ⇒ 부산공장의 경우 혼합음료의 생산은 중단되었지만 남아있는 재고는 동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재고물량이 처리될 때까지 조사한 후 품목 중지로 처리
- ⇒ 여주공장의 경우 혼합음료의 품목유고사항은 신규로 처리하고 조사
- 사례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표본품목이고 물량세분 품목인 프레스금형(72491)을 생산하는 종사자수 100인 미만인 사업체에서 기타금형(72493)을 새로이 생산할 경우에 사업체 관리는?
- ⇒ 이 경우의 물량세분 품목인 기타금형은 지수품목인 금형의 포괄범위에 있는 품목으로 품목신규가 아님. 그러나 사업체관리 프로그램(IPS) 운용상은 물량세분 품목 각각에 대해서도 변동처리를 하므로 품목신규로 처리하고 조사함
 - * 물량세분 품목은 생산, 출하, 재고 등의 물량을 파악하기 위한 품목으로 지수에 반영될 때는 합하여 한 품목으로 취급됨
- 사례 3: 2007년 3월에 ○ 산전 오산공장의 모든 생산설비가 ○ 산전 청주공장으로 이전·흡수되었다. 두 공장 모두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사업체인 경우 사업체관리는?
- ⇒ 오산공장의 경우 사업체 유고사항은 폐업(전출이 아님에 주의), 품목 유 고사항은 중지로 처리
- ⇒ 청주공장의 경우 사업체유고사항은 합병(전입이 아님에 주의), 품목 유 고사항은 오산공장에서 이전된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신규로 처리
 - ※ 이 경우 대부분 전·출입 관계로 처리되기 쉬운데, 전·출입은 완전히 동 일한 사업체가 시·도를 달리하여 이전할 때임

사례 4: 위의 예에서 ○ ○ 산전 청주공장이 조사대상 사업체가 아니었을 경우에 사업체 관리는?

- ⇒ 오산공장의 경우는 상기와 같이 처리
- ⇒ 청주공장의 경우 사업체 유고사항은 신규, 품목 유고사항은 이전된 품목은 신규, 종전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품목 범위 여부를 확인한 후 산업동향과 중분류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

사례 5: 조사 중인 갑사업체의 사업체명과 대표자만 바뀐 경우에 사업체관리는?

⇒ 갑사업체 : IPS상의 사업체명, 응답부서, 응답자명, 전화번호의 정보만 수정하여 계속 조사

사례 6: 갑사업체가 조사대상 품목의 일부 생산설비를 조사대상인 올사업체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사업체관리는?

- ⇒ 갑사업체 : 매각한 생산설비의 대상품목에 대해 품목 유고사항만 중지로 처리
- ⇒ 을사업체 : 구입한 생산설비가 기존의 생산품목과 다를 경우 → 신규 로 처리, 동일한 경우 → 변동처리 하지 않음

사례 7: 표본품목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갑사업체는 종사자 100인 미만 사업체로 조사대 상 사업체에 선정되지 않았는데, 2007년 3월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으로 변 동되었다. 이 경우의 사업체 관리는?

⇒ 조사담당자는 갑사업체의 종사자수 변동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확인 하고, 향후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사업체 및 품목 유고사항을 신규로 처리하고 조사함

사례 8: 종사자수 20인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종사자수 20인 미만, 100인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의 사업체의 관리는?

⇒ 기존 조사대상인 사업체의 경우 종사자수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대상 외 사업체로 처리하여서는 안됨.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말 에 산업동향과에서 표본보완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것임

- 사례 9: 기업은 제재목을 자체생산하는 조사대상 사업체였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으로 조사대상사업체인 △ △ 판자의 수탁업체로 변동되었다. 이 경우 사업체관리는?
- ⇒ 조사담당자는 ○○기업이 수탁업으로의 일시적인 변동인지를 확인한 후,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면 사업체 유고사항은 대상외, 품목유고 사항은 중지로 처리
- ⇒ △△판자의 사업체변동 내용은 없음

사례 10: ○ 전기는 사업체 분사로 ○ ○ 디스플레이를 설립하여 기타LCD 설비는 ○ 디스플레이에서 관리·생산한다. 이경우 사업체 관리는?

- ⇒ ○ 전기 : 생산실적 부문의 기타LCD(D49300), 생산능력의 기타LCD(A18600) 품목 중지처리
- ⇒ ○ 디스플레이 : 생산실적 부문의 기타LCD(D49300), 생산능력의 기타LCD(A18600) 품목 신규처리
 - ※ 생산실적 부문 품목은 착오나 중지 등의 처리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생산능력 품목은 사업체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사례 11: ○ ○ 텍스는 순합성섬유직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직기를 전부 매각하고 4가 지조건에 의한 자체생산을 만족하는 사업체로 전환하였다. 이 경우 능력품목의 사업체 관리는?

- ⇒ 생산실적 부문의 순합성섬유직물(D10391)은 변동처리하지 않고, 생산능력 의 직물(A03600)은 품목유고를 중지처리한 후 저장
 - ※ 품목중지처리 하지 않고 레코드 자체를 삭제할 경우 과거의 이력을 관리할 수 없어 향후 해당품목에 대한 재확인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3. 조사용어해설

가. 품목별 생산실적・출하・재고

	자 :	체	○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생 산 실 적	위	탁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 를 제공하여 생산한 경우
적	수 1	탁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 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경우
구	•	입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하였거나, 동일기업내의 다른 공장에서 입고하거 나 빌려온 제품(※구입분이 출하, 재고에서 구분 가능시 조사 제외)
재	투	입	○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 공정에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소비되었거나, 위탁 생산업체에 원재료, 연료, 촉매제 등으로 제공한 경우
	내 -	수	○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국내 판매업자, 타 사업체, 기관, 단체, 소비 자 등에게 출하되었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제품 의 부품으로 출고된 경우
출 하	수	출	○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 또는 주한 외국군, 면세점으로 납품한 경우
	타 공장 ! 기타 출		○ 동일조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었거 나, 선물, 견본, 전시용, 제품포장용, 설비보수용 등으로 출하된 경우
과	부	족	 ○ 폐기처분, 화재, 수해, 도난, 파손, 분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계상 ○ 함수관계(전월재고 + 금월생산 + 구입 - 재투입 - 금월출하 ± 과부 족 = 금월재고) 불일치에 대한 보정
월	말 재 :	고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의 월말기준 재고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 포함
비	고 사 형	항	○ 전월대비 30%이상 증감되었거나 과부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품목별로 자세히 기입

나. 품목별 수주량·진척량

당 월 수주 량	국내용	○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받은 량
수수당	수출용	○ 국내 수주량과 수출 수주량으로 구분하여 기입
당 월	국내용	○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 중인 선박, 전동차의 공정 진척 률에 따른 환산량으로 개별 선박, 전동차의 진척량(수주량×
당 월 진 척 량	수출용	당월공정진척률)의 총합을 기입 ○ 국내 진척량과 수출 진척량으로 구분하여 기입
	국내용	○ 총수주 량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뺀 나머지 수주량
수주잔량	수출용	○ 국내 수주잔량과 수출 수주잔량으로 구분하여 기입 ※ 금월수주잔량=전월 수주잔량 + 당월 수주량 - 당월 진척량
	톤 수	○ 공정 진척도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주문 처에 납품한 량 - 선박은 완성인도 『톤수』,『척(량)』란을 모두 기재
당 월 완성인도	최(량)	- 전동차는 『척(량)』란에 완성 전동차 수(량)만 기재 - 원자로는 『톤수』란에 'MW',『척(량)』란에 원자로 호기를 기재 - 해상금속구조물은『톤수』란에 'M/T',『척(량)』란에 구조물수를 기재

다. 품목별 생산능력

생 산 능 력	최대생산능력에 설비효율이 감안된 적정생산능력을 말함해당 사업체의 지정된 조업시간, 조업일수 및 단위시간당 설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요설비보유수	○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설비수
표준조업일수	○ 사업체에서 지정한 조업일수로서 통상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에 따라 노무관련 부서가 작성한 『연간지정조업일수/12』로 산정(토요일의 경우 오전 또는 오후만 조업하면 0.5일로 환산)
1일표준조업시간	○ 사업체에서 지정한 1일 지정조업시간으로서 통상 기본작업시간에 정규적인 잔업시간을 더한 실제조업시간으로 산정 ※ 식사시간을 제외한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시간
생산능력중감사유부호	○ 지난달과 생산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
비고사항	○ 생산능력 변동사유 또는 참고사항을 품목별로 자세히 기입

라.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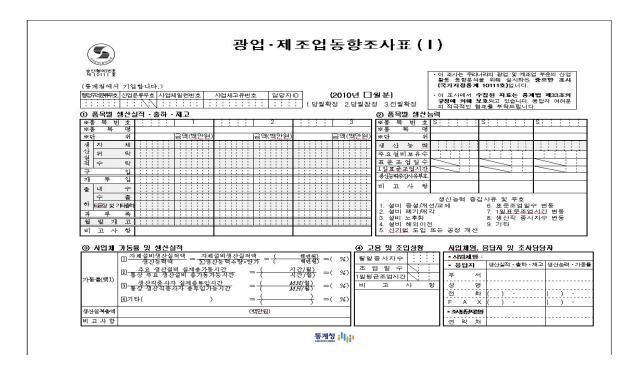
가 동 률	○ 생산능력대비 생산실적의 비율로서 사업체의 가동상황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4개의 계열 중 하나를 선택 - 생산능력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 인력, 가동 조건(일수 및 시 간 등)하에서 최대 생산가능 실적
생산실적총액	○ 해당 월 동안 생산된 모든 제품(완제품, 반제품 등)에 대하여 작성 - 생산실적총액=매출총액 + 월말 총재고액 - 월초 총재고액
비고사항	o 가동률 산정 기준의 변경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활용

마. 고용 및 조업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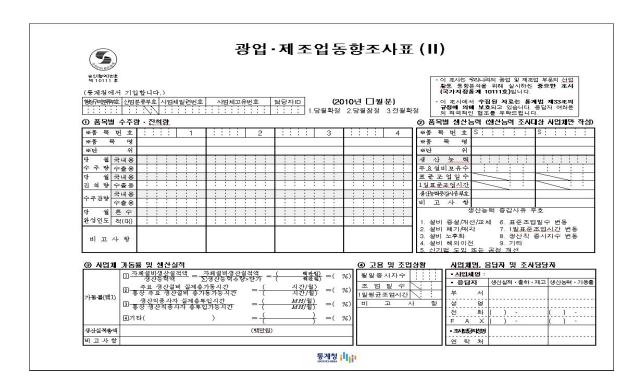
월말종사자수	 조사 대상월 월말기준의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와 용역, 도급, 소사장제 종사자의 총합 ○월말 종사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으로 조사(수시로 종사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 됨)
조 업 일 수	○ 월 중에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한 일수(휴일을 포함한 1개월 동안의 실 제 공장 가동일수)
1일평균조업시간	○ 해당월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 ÷ 월중 조업일수
비고 사 항	○ 고용 및 조업상항 관련 특기사항 기록

4. 조사표(견본)

가. 광업제조업동향조사표 I



나. 광업제조업동향조사표Ⅱ



5.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52종)

(2010. 4. 1. 현재)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조사통계(42종)				
	5 년	• 인구총조사 • 서비스업총조사	주택농림	총조사 어업총조사	
	2 년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전수조 (13종)		광업제조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기업활동조사		업조사 업법인조사	
	분 기	• 전자상거래동향조사	• 어류	양식동향조사	
	매 월	• 인구동향조사			
	5 년	생활시간조사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 가계	자산조사	
표본조· (29종)		 사회조사 도소매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농업면적조사 	서비농축농업양곡사교	소비량조사 육비조사	
	분 기	• 가축동향조사	• 농가	판매및구입가격	조사
	매 월	경제활동인구조사소비자물가조사건설경기동향조사서비스업동향조사어업생산동향조사	광업기계	동향조사 제조업동향조사 수주동향조사 버쇼핑동향조사	
,	5 년	• 장래인구추계	• 장래	가구추계	
가공통계 (8종)	매 년	• 국가자산통계 • 생명표	지역사망	소득 원인통계	
	매 월	• 경기종합지수	• 설비	투자지수	
보고통계	매 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2종)	매 월	• 국내인구이동통계			

6. 생산능력의 개념 및 산정방법

① 생산능력의 개념

가. 측정방법별 개념

- ㅇ 기술적 개념에 의한 생산능력 측정
 - 생산설비의 물리적·기계적 성능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측정
 - 설비의 단위시간당 생산능력에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를 곱하여 생산능력 산출
- ㅇ 비용개념에 의한 생산능력 측정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에서 단위비용을 최소화 하는 생산량을 생산능력으로 평가

나. 생산능력 개념의 유형

- ㅇ 최대생산능력
 - 사업체가 조사시점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와 노동력, 기술수준 등 조업조건에 서 이론상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량
 - 인력, 원재료, 자본 등 생산요소 수급과 시장수요가 충분하며, 설비 및 노동력 의 효율은 100% 라고 가정
 - 조사시점 현재 설비에 추가적인 조치없이 정상가동이 가능한 모든 설비 포함 (유휴설비, 예비설비 포함)
 - □ 유휴설비: 즉시 정상가동이 가능하지만 조사시점 현재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설비
 - 예비설비 :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ㅇ 표준생산능력

- 사업체의 조사시점 현재 시간당 생산능력에 표준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조업시간, 조업일수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생산능력
- 동일 품목(설비 또는 업종)에 대해 표준적인 조건을 적용

ㅇ 적정생산능력

- 사업체가 보유한 설비 및 노동력의 효율과 사업체의 작업환경(평균 조업시간 및 일수, 기술조건, 원재료수급, 시장애로 등)에서 최대한 생산가능한 량
- 현재 가동중인 설비와 의도되지 않은 유휴설비 중 즉시 가동 가능한 설비를 포함하며, 의도된 유휴설비와 예비설비는 제외
- 사업체별로 최소단위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비용측면의 조업조건을 포함한 개념

ㅇ 현실능력

- 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측정
- 과거 일정기간내 최대생산실적을 생산능력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최대생산실 적 및 최소생산실적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생산실적을 산출한 후 이를 생산능 력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음
 - ※ 생산능력에 대한 개념은 조사기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다. 통계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산능력 개념

- ㅇ 기술적 개념과 비용 개념을 혼합한 적정생산능력개념을 채택
 - 과거에는 사업체의 설비능력에 통계청에서 품목마다 지정한 표준조업시간과 표준조업일수를 적용하는 표준생산능력개념을 적용하였으나 1995년기준 지수개편 이후 적정생산능력개념을 적용
 - 사업체의 설비능력에 사업체별 1일표준조업시간과 표준조업일수를 적용하여 생산능력을 측정
 -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산정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의 조업조건을 감안한 생산능력 측정

ㅇ 생산능력 산식

- - 설비대수 : 주요(애로)설비수
 - 설비단위당 생산능력 : 설비의 단위시간당 최대생산가능량×설비효율
 - 1일표준조업시간(표준조업일수) 설비가 제품생산을 위해 통상적으로 가동하는 시간(일수)을 적용하며, 일시적인 조업시간(일수)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 설비 가동시간과 노동자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설비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② 생산능력 산정기준

가. 주요(애로)설비

- 생산능력 측정시 기준이 되는 설비로 주요설비 또는 애로설비가 있음
 - 주요설비 : 그 제품의 생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당설비의 생산능력을 전체 생산능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생산설비
 - 애로설비 : 생산공정중 시간이 가장 지체되는 설비
- 주요(애로)설비가 사업체별로 다양한 경우, 다수의 사업체가 사용하는 주요설비 또는 애로설비를 복수 지정
- 설비대수는 생산능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요(애로)설비의 대수를 조사하며 여러 설비가 하나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설비(라인)로 조사
- 설비별로 노후정도와 효율이 다를 경우 설비의 평균적인 효율을 적용
 - 설비별로 규모가 다른 경우는 각 설비별로 능력을 측정한 후 합산

나. 설비효율

- 설비효율이란 사업체가 불가피하게 감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손실(loss time)
 을 감안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경험적 측정치를 적용
 - □ (예) 24시간 30일 조업하는 업체의 설비가 1시간당 1M/T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정상가동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하여야 할 경우
 ☞ 생산능력 = 1M/T×50/60×30일×24시간 = 600M/T
- 최대생산능력과 설비효율을 별도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생산능력을 바로 조사함
- 설비효율은 주요(애로)설비의 노후화 정도 뿐만 아니라 공정배치, 주변설비의 효율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다. 1일표준조업시간

○ 1일표준조업시간은 사업체에서 설비 혹은 노동력이 제품생산을 위해 가동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기본작업시간에 정규적인 잔업시간을 더한 실제 조 업시간임

-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본시간 같은 성격을 갖는 정규적인 잔업시 간은 1일 표준조업시간에 포함되나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되는 일시적인 잔업시간은 제외
 - □ (예) D시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8시간을 기본작업시간에 2시간의 정규적 잔업을 하고, 작업물량이 많은 경우 추가로 잔업을 하기로 한 경우
 □ 1일표준조업시간 = 8시간(기본작업시간)+2시간(정규적 잔업시간)= 10시간
 *일시적인 잔업은 제외
- ㅇ 설비가 가동되는 시간 중 제품생산을 위한 준비시간은 제외
 - ▶ (예) A설비의 1회 가동시간이 6시간이고 한번 생산을 위해 시전예열 및 점검 1시간 과 냉각 및 청소 1시간이 필요하며 하루에 3회 가동하는 경우, 이때 노동자는 8시 간씩 3교대로 근무함
 - ☞ 1일표준조업시간 = {8시간(총기동시간)-2시간(점검및청소시간)}×3회 = 18시간
- 조업시간의 구성

총조업시간							
1일표준조약	보시 간	식사 및 설비가동 준비시간					
기본 작업시간							

- 사업체의 1일표준조업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생산능력에 즉시 반영하여야 하며, 조 업시간의 변경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종사자수나 설비 가동시간의 변동 없이 교대근무만 변경(3교대 → 2교대, 1교대 → 2교대)하는 경우는 능력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종사자수나 설비 가동시간이 교대근무 변경에 비례하여 변동된 경우는 생산능력 변경

라. 표준조업일수

- 표준조업일수는 각 사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해 통상적으로 가동하는 연간지정조 업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조사
- 연간 통례적으로 적용되는 휴일과 휴무, 설비보수의 기간을 제외한 Work calendar상의 조업일수를 조사

-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때 소비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실제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가동하는 경우는 조업일수에서 제외
 - □ (예) 도자기를 만드는 H업체에서 기열로를 기동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데 드 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하지만 실제로 생산은 300일, 하루 12시간만 하는 경우
 - ☞ H업체의 표준조업일수 = 300일/12개월=25일, 1일표준조업시간 12시간
- 연례적인 설비보수기간은 조업일수에서 제외하며,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정례 적이지 않은 사유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경우는 조업일수에 포함
- 연간지정조업일수의 계산 중 토요일의 경우 종일 조업하면 1일로, 오전 또는 오후만 조업하면 0.5일로 환산
- 신규 사업체는 월중 조업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익월부터 조사하며, 조업일수가
 20일 이상이면 정상조업으로 간주하여 1일표준조업시간과 표준조업일수를 조사하여 능력 조사
 - □ (예) 「○ 제강」이 2007. 11. 22일부터 9일간 '아연도강판'을 신규 생산하는 경우에 2007. 12월분부터 조사
 - □ (예) 「△ △ 제강」이 2007. 11. 5일부터 휴일없이 26일간 '아연도강판'을 신규 생산하는 경우에 2007. 11월분부터 조사
 - ☞ 생산능력 =시간당생산능력×30일(표준조업일수)×24시간(1일표준조업시간)

③ 생산능력 산정방법

가. 적정생산능력

1) 일반사항

- 평균적인 숙련노동자의 조업능력과 통상적인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체에서 보유한 설비의 능력을 조사하여야 함
 - 설비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실적에 연동하여 능력을 조정하여서 는 안됨
 - 통상적인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소규모로 종사자수 가 변동되는 경우는 생산능력에 반영하지 않음

- □ 단, 3개월이상 채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생산능력에 반영할 수 있으나 업종 및 사업체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생산능력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 1일표준조업시간 및 표준조업일수는 사업체의 연간 평균적인 조업시간 및 일수를 적용함
 - 휴업,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정례적이지 않은 조업일수의 변동은 생산능력에 반영하지 않음
 - 주문의 증감, 원자재 수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시간(일수)이 변동된 경우도 생산능력에 반영하지 않음
- 생산능력산정 대상은 사업체가 아닌 품목이므로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조사대상품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생산실적 부문의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조사하는 경우 생산능 력산정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이때 조사단위가 다른 경우(방적사, 직물, 제혁 등) 반드시 환산하여 생산능력을 산정하여야 함(생산실적은 입력프로그램에서 환산됨)
- 생산능력은 한번 산정하면 설비의 변동(신설, 폐기 등), 제품의 변경, 공정의 획기적인 변경, 실조업시간의 큰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랜기간 유지되므로 처음 생산능력 산정시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함

2) 생산능력산정 대상 설비

- 생산능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는 조사시점 현재 사업체에서 보유한 설비 중설비에 추가적 조치없이 즉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설비로서 주요(애로)설비를 대상으로 함
 - 설비를 도입한 시점부터 계획된 유휴설비는 제외하며, 경기부진 때문에 일시 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설비는 포함
 - 휴업중인 설비중 곧바로 사용가능한 설비는 모두 포함하며, 재가동하려면 대 규모 개조를 요하는 생산설비는 제외
 - 폐기, 매각 또는 이전 등의 계획으로 현재 가동하지 않더라도 실제 철거되기 전까지는 생산설비에 포함한다. 다만 생산설비로서 완전 불가능한 상태(폐기 를 목적으로 창고에 방치 등) 및 재가동하려면 대규모 보수와 개조를 요하는 생산설비는 제외

- 노후설비는 노후화에 따른 효율의 저하를 감안하여야 함
 - □ (예) A사업체에서 100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 모두 효율이 50%로 저하된 경우 생산능력산정은 전체 100대의 효율 50%를 감안하여 생산능력을 산정
- 조립공정에서 특정설비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는 조립공정 중 제품의 생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애로공정을 기준으로 생산능 력을 산정
- 라인공정중 중간공정마다 다른 조사대상품목이 생산되는 경우는 각 품목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갖추는 공정을 기준으로 각 품목의 능력을 측정하여야 함
 - 단, 중간제품이 동일공정에서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곧바로 투입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지침서상의 주요(애로)설비와 사업체에서 지정한 주요(애로) 설비가 다른 경우 사업체에서 지정한 설비를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산정
 - 지침서상의 주요(애로)설비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중 많은 업체에서 지 정한 대표적인 설비를 표시한 것임

3) 사업체의 변동

- 조사대상 사업체가 합병한(된) 경우 합병한 사업체의 생산능력은 합병된 사업체의 생산능력을 포함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며 합병된 사업체는 사업체관리를 해야함
 - 이때 합병과정에서 설비의 변동, 공정개선, 라인조정 등 능력변동사유를 확인 후 재산정하여야 함
 - 합병한 사업체가 기존 조사대상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합병 된 사업체(기존 조사대상사업체)의 생산능력과 그 비율을 적용한 생산실적을 계산하여 조사하여야 함
 - 이 경우 합병한 사업체의 전체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도 조사하여야 하며, 추후 연간보정 또는 소급조사를 통해 과거계열과 연결하여야 함
- 다른 사업체로 설비가 이전된 경우에 이전받은 사업체의 생산능력은 이전한 사업체의 생산능력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함
 - 이전한 사업체와 이전받은 사업체가 중복조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이전

받은 사업체가 조사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본청과 협의하여 사업체 관리를 하여야 함

- 생산능력은 사업체 합병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 설비가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하여야 함

4) 품목별 생산능력측정시 유의할 사항

- 품목별 지정된 조사단위로 생산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가 지정 된 조사단위와 다를 경우 반드시 지정된 조사단위로 환산
- 동일 생산설비에서 2종 이상의 품목이 생산되는 경우는 과거 품목별 생산실적 비율과 향후계획을 감안하여 생산능력 산정
 - 보충적으로 노동투입비율, 원재료 투입비율, 주요기계의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생산능력을 배분산정
- 동일 설비에서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과거 규격별생산실적을 검 토하여 생산능력 산정
 - 단, 여러 설비에서 설비마다 다른 규격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는 각각의 설비의 생산능력을 산정한 후 합산
- 정유의 생산능력은 원유 증류장치의 정제능력으로 조사하므로 생산실적은 생산실 적 부문과는 달리 매월 원유 처리량으로 조사함
- 다른 제품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도 향후 기존품목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은 없더라도 기존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생산능력은 조사하여야함
- 단가 혹은 규격의 차이가 큰 제품을 생산하여 물량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금액변동을 반영하여 능력을 조정하여야 함
 - 일시적인 경우는 생산액 및 단가차이 변동을 확인하여 생산실적을 조정하여 가동률에 반영하며 생산능력은 변경하지 않음
 - ☑ (예) A사에서 단가가 100만원인 제품을 10개를 생산하였으나 제품을 변경하여 단가가 300만원인 제품을 5개를 생산하는 경우(표준조업일수 25일)생산능력은?

<변경전> C=10개×25일=250개

<변경후> C=5개×25일×(300만원/100만원)=375개

5)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의 관계

-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주문 증감 또는 계절성이 심한 품목 등으로 생산 실적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감한 경우에는 생산능력을 재산정하지 않음
- 3개월이상 가동률이 40%미만 또는 100%이상 지속될 때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생산능력의 재산정 여부를 본청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 주요설비를 지정할 수 없고 주문에 의해 생산실적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는 과거 생산실적과 향후 생산계획을 확인하여 생산능력을 추정

6) 기타

- 조립생산의 경우 조립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투입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직 종사자수를 감안하여 생산능력을 산정
 - 조립능력은 설비능력과 작업능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결합비율은 사업체의 현실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이는 일정기간 준고정적으로 유지 됨 [조립능력 = f(설비능력, 작업능력)]
 - ▶ (예) ⑤컴퓨터, 는 적극적인 해외시장의 개척 결과 장기적인 수출물량의 확보로 생산적 종시자가 기존 180명에서 240명으로 충원함에 따라 생산능력을 재산정하게 됨

*시간당 1인평균 조립능력이 0.35대일 경우에 생산능력 계산

<변경전> C = 180명×10시간×0.35대/H×4개라인×25일=63,000대

<변경후> C = 240명×10시간×0.35대/H×4개라인×25일=84,000대

- 설비증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향상이나 공정개선, 기타 생산방법 이 변경된 경우에도 생산능력에 반영
 - □ (예) D타이어공업 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대형 타이어에서 소형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체제 위주로 변경하기로 이사화에서 결정되어 생산능력을 재산정

<변경전> C=(7.5본×0.2+9.0본×0.2+11.6본×0.2+15본×0.4)(시간당 생산능력)×680대(가류기)×0.9(설비효율)×20시간×25일×1/1000 ≒ 35.556 천본

<변경후> C=(7.5본×0.1+9.0본×0.1+11.6본×0.1+15본×0.7)(시간당생산능력)×680대(가류기)×0.9(설비효율)×20시간×25일×1/1000 ≒ 40,729 천본

타이어종류	시간당 생산능력	사용시간 구성비		
4995#	(본)	변경전	변경후	
산 업 용	7.5	20%	10%	
트럭·버스용	9.0	20%	10%	
소형트럭용	11.6	20%	10%	
소형승용차용	15.0	40%	70%	

- 투입 원재료의 품질에 따라 생산량에 차이가 날 때는 투입비중이 가장 큰 원재료(품질)를 기준으로 생산능력 산정
 - □ (예) 「S전자」는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데 있어 주원재료가 게르마늄(Ge)에서 실 리콘으로 변경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증가하여 재산정함

<변경전> C=8개/분×1대(다이본드)×60분×24시간×30일×1/1000 ≒346천개

<변경후> C=10개/분×1대(다이본드)×60분×24시간×30일×1/1000 ≒432천개

-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의 일부 단계를 하청 주고 반제품 상태로 받은 뒤 동일설비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에는 생산능력에 반영하지 않음
 - 반제품 위탁생산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생산 능력 재산정
- 자체생산을 하다가 위탁생산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생산능력 재산정 및 생산능력조사 여부를 본청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 생산공정의 일부분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조사를 계속하되 생산능력 재산정 필요
 - 위탁생산을 하지만 위탁받은 사업체가 소사장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계속적인 생산능력 파악이 가능한 경우 생산능력 조사 계속실시
 - 위탁받은 사업체가 동일품목을 여러 사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등 사실상 생산능력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청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후 생산능력조사 중지
- 일괄공정의 중간공정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동일공정에 곧바로 재투입되는 경우 재투입되는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생산제품만을 생산능력에 반영

- 일정부분만 재투입되는 경우는 해당품목(재투입되는 품목)의 총생산능력에 상 품으로 출하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생산능력을 산정
 - ※ 이 경우 생산실적 부문에서 조사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에서의 생산실적 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 (예) 「종이(S05400) 생산공정에서 백상지(생산실적 부문 품목 D15600)를 생산하여 이트지(생산실적 부문 품목 D15900) 생산에 백상지 물량의 일부를 재투입되는 경우 백상지 생산량중 이트지 생산에 재투입되는 물량은 제외하여 조사
- 이전 공정(설비)과 분리된 다른 공정(설비)으로 재투입되는 경우는 재투입제품 과 최종생산제품을 모두 조사
- 주문에 따라 종사자수의 변동이 심한 경우는 보유한 생산장비를 모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청 생산능력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나. 생산실적 피크 방식

1) 개요

- 기술변화가 빨리 진행되어 생산능력 측정이 어려운 반도체, 철강선박 등과 적 정생산능력 개념으로 생산능력 측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 산정
- 생산실적 피크(Peak)시를 생산능력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모든 조건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생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술혁신, 설비의 고급화나 노후화 등도 포함하여 파악됨
- 대상품목 : 수소 등 17개

품목부호	품목명	품목부호	품목명
S08500	수소	S22100	광학렌즈
S17500	스테인리스제가정용품	S25100	밸브
S17700	바이폴라집적회로	S27000	금형
S17800	모스메모리	S27600	철강선박
S18000	혼성집적회로	S27900	차량용내장가구
S18100	모스비메모리	S28000	싱크대
S18400	백라이트 유니트	S28100	귀금속장신구
S21000	의료용방사선기기	S28400	전자악기
S21800	온도조절기구		

2) IPS 입력방법

- 철강선박을 제외한 16개 품목
 - 「생산능력」 항목을 입력하지 않음
- ㅇ 철강선박
 - 2005년기준 개편시부터 철강선박 생산능력 추정방법을 생산실적피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생산능력 변화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보조지표 필요
 - 연간 생산계획물량에는 조선산업 수요감소 등에 의한 설비의 부분적 철수, 외 주생산의 감소 등이 적시 반영됨
 - 「생산능력」항목에 연간 생산계획물량을 12로 나눈 월평균생산계획물량을 입력
 - 연간 생산계획물량 자료는 반드시 생산계획 관련 부서에서 조사
 - 연중에 연간 생산계획물량 변경시 해당월 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입력
 - □ (예) 당초 연간 생산계획물량 1200CGT, 생산능력 칸에 입력할 수치?
 → 1200CGT / 12개월 = 100CGT
 - □ (예) 2008년 7월 도크를 신설하여 7월에 연간 생산계획물량을 1500CGT로 변경, 7월 이후 생산능력 칸에 입력할 수치?
 - → (1500CGT-600CGT)/ 6개월 = 150CGT
 - ※ 가동률을 모니터링하고 장기간 가동률 저하시 사업체의 원인을 확인하여 본 청 중분류 담당자와 협의

8. 사업체가동률의 개념 및 산정예시

1 개요

가. 기본개념

- '사업체 가동률'이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제반요소(자본, 노동력, 원재료, 기술 등)가 충족된 상태에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를 완전(full)가동하여 생산 할 때 사업체 전체의 총생산가능 예측치(생산능력)에 대한 실제 총생산활동 결과치(생산실적)의 백분비를 의미
 - 매월의 생산능력은 실현가능한 상태(조업시간, 인력 등)에서 장기간동안 지속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의미하며 계절, 조업일수 등의 변동 상황은 반영하지 않음
- '사업체 가동률'은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생산능력조사 지정품목 여부 및 제품형태(완제품, 반제품 등)를 구분하지 않고 전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체 전 체의 가동실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조사방법
 - 단, 사업부제로 운영하거나 일부 다 업종 사업체는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사업부 또는 업종 단위로 작성

나. 조사 필요성

- 현행 품목 단위 가동률 조사는 생산능력 산정상의 제약 및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대상 품목 및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사업체의 전반적인 실질 가동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와 같이 품목 단위 가동률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체 단위의 실질적인 가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계이용자의 제조업 하위 업종별 가동률의 절대수준(%)에 부응하는 목적에서도 사업체 가동률조사의 의의가 있음
 - ⇒ 2010년 4월부터 3월분 및 1,2월분 소급조사 실시

다. 조사대상(범위)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 중 제조업 사업체
 - 자체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지만 4대 조건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포함)제외
 - 생산설비가 없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없으며 가동률 산정 불가능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지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4대조건

- 1) 제품 기획
- 2)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업체에 제공
- 3) 자기 명의 제조
- 4) 자기 시장 판매

라. 조사단위

- 1개 사업체, 1개 가동률로 조사
 - 단, 다음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가동률을 조사
 - ① 사업부제 운영 : 사업부 단위로 조사
 - · 1사업체이지만 임금지불대장 등 경영 장부를 사업본부 단위로 관리 시 각 사업부를 개별 사업체로 구분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지침서 p. 13)

예시)삼성전자 구미공장

- HDD : 디바이스 솔루션 네트워크 사업본부

- 휴대폰 :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

- ② 각 업종별 출하액 합 대비 해당 사업체 출하액 비중이 큰 일부 사업체
 - 매년 산업동향과에서 지정
- ※ ①, ② 모두 해당 되는 사업체는 ①사업부제 운영 기준을 적용

마. 산업분류의 결정

○ 각 조사 단위별 주된 산업중분류(단 C26의 경우는 산업소분류)로 결정하며 주 산업 분류에 사업체 전체의 가동률을 포괄하여 조사

② 가동률 산정기준별 예시

가. 금액기준

(예시) 휴대폰과 TV를 생산하는 『길동전자』의 가동률

		수냥(대)	생산자	급액 (백 <i>만</i> 원)		
	생산능력	생산식적	가동륜	판매단가 (백안원)	생산능력	생산식적	가동륜
TV	50	40	80.0%	0.5	25 (=50 × 0.1)	20 (=40 × 0.5)	80.0%
휴대폰	100	90	90.0%	0.1	10 (=100 × 0.1)	9 (=90 × 0.1원)	90.0%
길동전자 (=TV+휴대폰)	150 (=50+100)	130 (=40+90)	$\frac{130}{150} * 100 = 86.7\%$	-	35 (=25+10)	29 (=20+9)	$\frac{29}{35} *100 = 82.9\%$

나. 설비가동시간 기준

(예시) 『길동화학』의 주요 생산설비별 가동일수 및 시간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구인생산세	2	6상 가동7	가능시 간		이번 당식/	 가동륜	
	익수	시간	익수×시간	익수	시간	익수×시간	715 4
Λ	20	c	160	15	8	120	
А		0		5	0	0	
В	20	4	80	20	3	60	
С	15	8	120	15	8	120	
길동화학			360			300	$\frac{300}{360}$ * 100 = 83.3%

다. 생산직종사자 Man-Hour 기준

(예시) 『길동기계』 생산직 종사자 작업일수 및 시간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생생왕자	통상 총투입가능시간			0 (16	선 당 실제	 가동륙			
	익수	시간	익수×시간	익수	시간	익수×시간	/ हिन्		
	20	o	160	18	8	144			
汨		0	700	2	4	8			
을	20	8	160	20	7	140			
	20	c	20 8	20 8	0 8 1/0	15	8	120	
병	20	0	160	5	0	0			
길동기계			480			412	$\frac{412}{480}$ * 100 = 85.8%		

8.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부문 품목비교표

	생 산 능 력						생산실적 부문			
3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 <u>동률</u> 기중치		품	목	단위	
C10	식료품 제조	<u> -</u> 업								
				598.6	531.4					
C101	도축, 육류	가고 민	저자	처리 어						
CIOI	,	/10 X	710	53.4	40.6					
S00100	햄및소시지		M/T	53.4	40.6	01300	·····································		M/T	
			,			01400	소시지(축	육)	M/T	
C102	<u> </u>	7 ml ml	-) -) -)	10]						
C102	수산물 가공	5 및 시	상 저리	업 48.1	48.0					
S00200	어육연제품		M/T	33.3	32.8	01500	어육연제		M/T	
	수산물통조림		M/T	14.8	15.2	01600	수산물통		M/T	
	1	7) 7 7 171	,		1	ı			'	
C103	과실, 채소	/1で 吳	ሳሪ	저리엽 22.1	21.6					
S00400	김치		M/T	22.1	21.6	02100	 김치		M/T	
	· · · · · · · · · · · · · · · · · · ·		,		21.0	02100	H. J		141/ 1	
C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		10.0					
S00500	 대두박		M/T	19.4 7.8	18.9 7.5	02400	 대두박		M/T	
	대두유(식용)		kl	11.6	11.4	02700	대두유(식	용)	kl	
						1	77.11(1	<u> </u>		
C105	낙농제품 및	닏 식용병]과류 기							
	-1 A			109.0	91.5	22122	- N A		1.0	
S00700	• •		kℓ Na 4T	31.6	30.8	03100			kl	
	분유 유산균발효유		M/T	10.4	7.8	03200	분유 유산균발2	☆ ◊	M/T	
	아이스크림류		kℓ M/T	34.4 32.6	29.0 23.9	03300	아이스크		kℓ M/T	
301000	可可二二日刊		101/1	32.0	23.9	03691		•	M/T	
						03692	빙과	ц	M/T	
					_	1 320,2	<u> </u>		/ -	
C106	곡물가공품	, 전분 및	및 전분	제품 제조 57.8	. 업 58.3					
S01100	밀가루		M/T	42.8	42.8	03700	밀가루		M/T	
	혼합조제분말		M/T	10.1	11.2	03800	혼합조제	분말	M/T	
	- 1- 1		, -		-1.2	03891	이유식		M/T	
						03892	프리믹스		M/T	
			I		L	<u> </u>	· ·			

	생 산 능	Ą	J산실적 부문				
<u> </u>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五	목	단위
S01300 전분		M/T	4.9	4.3	04000 전분		M/T

C107 기타 식품 제조업

244.0 203.6

S01400	빵및케이크	M/T	31.5	26.4	04400	빵및케이크	M/T
S01500	건과자및스낵류	M/T	44.8	32.0	04500	건과자및스낵류	M/T
S01600	설탕과자	M/T	32.3	27.2	04600	설탕과자	M/T
S01700	껌	M/T	19.2	9.2	04700	껌	M/T
S01800	정당	M/T	10.6	13.1	04800	정당	M/T
S01900	라면류	M/T	30.6	27.6	05000	라면류	M/T
S02000	화학조미료	M/T	3.9	4.5	05100	화학조미료	M/T
S02100	혼합조미료	M/T	7.6	8.1	05200	혼합조미료	M/T
S02200	커피크리머	M/T	6.9	7.9	05900	커피크리머	M/T
S02300	커피	M/T	13.1	11.9	06200	커피	M/T
S02400	건강보조식품	kg	16.8	12.6	06900	건강보조식품	kg
					06991	스쿠알렌식품	kg
					06992	효소식품	kg
					06993	정제어유가공식품	kg
					06994	알로에식품	kg
					06995	기타건강보조식품	kg
S02500	냉동식품	M/T	26.7	23.1	07100	냉동식품	M/T

C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44.8 48.9

C02(00 베칭기크) (/T	44.0	10.0	07200 베칭타	N / / T
S02600 배합사료	M/T	44.8	48.9	07200 배합사료	M/T

C11 음료 제조업

196.3 176.5

C111 알콜음료 제조업

114.1 105.6

S02700 맥주	kℓ	62.6	53.9	07700 맥주	kℓ
S02800 주정	kℓ	6.1	6.4	08000 주정	kℓ

생 산 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五	목	단위			
S02900 소주	kℓ	34.6	36.2	08100	소주		kℓ			
S03000 위스키	kℓ	10.8	9.1	08200	위스키		kℓ			
C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h 제조약	걸								
		82.2	70.9							
S03100 생수	kℓ	3.4	3.9	08400	생수		kℓ			
S03200 청량음료	kℓ	73.0	62.6	08500	탄산음료		kℓ			
				08600	혼합음료		kℓ			

5.8

C12	담배 제조업		
		71 1	61.2

 $k\ell$

C120 담배 제조업

S03300 두유

71.1 61.2

08800 과즙음료

08900 커피음료

4.4 09000 두유

kℓ

kℓ

kℓ

S03400 담배 백만 비	71.1	61.2	09100 담배	백만개 비
-------------------	------	------	----------	----------

C13섬유제품 제조업274.6250.8

C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38.2 36.4

		50.2	50.1			
S03500 방적사	M/1	38.2	36.4	09200	면사	M/T
				09291	순면사	M/T
				09292	혼방면사	M/T
				09300	소모사	kg
				09391	순소모사	kg
				09392	혼방소모사	kg
				09400	방모사	M/T

	생 산 능 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3 -3 -3 - 3									
S03500	방적사(계	속)					09491	순방모사		M/T
							09492	혼방방모사		M/T
							09600	합성섬유사		M/T
							09691	순합성섬유	사	M/T
							09692	혼방합성섬	유사	M/T
							09800	커버링사		kg

C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12.3 104.9

			101.7			
S03600 직물	천 m²	71.0	68.2	09900	면직물	천 m²
				09991	순면직물	천 m²
				09992	혼방면직물	천 m²
				10000	소모직물	천 m²
				10091	순소모직물	천 m²
				10092	혼방소모직물	천 m²
				10100	방모직물	m²
				10191	순방모직물	m²
				10192	혼방방모직물	m²
				10200	재생섬유직물	천 m²
				10300	합성섬유직물	천 m²
				10391	순합성섬유직물	천 m²
				10392	혼방합성섬유직물	천 m²
				10393	합성섬유파일직물	천 m²
S03700 타포린	M/T	12.9	12.0	10900	타포린	M/T
S03800 직물포대	천 m²	5.0	4.7	11000	직물포대	천 m²
S03900 자동차용카바	천매	23.4	20.0	11100	자동차용카바	천매

C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88.6 67.8

S04000 염색직물	천 m²	88.6	67.8	11300	염색직물	천 m²

C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35.5 41.7

S04100 부직포	M/T	23.0	25.4	11800	부직포	M/T
S04200 타이어코드지	M/T	12.5	16.3	11900	타이어코드지	M/T

생 산 능 력				생신	<u></u> 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苦	목	단위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4.8 31.5

C143 면조의복 제조업

35.5 24.6

S04300 메리야스내의	천매	24.6	11.6	12800	메리야스내의	천매
S04400 메리야스외의	천매	10.9	13.0	12900	메리야스외의	천매

C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	6.9		
S04500 스타킹	천켤레	9.3	6.9	13000 스타킹	천켤레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5.0 53.3

C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3 23.5

S04600 제혁	천 m²	23.3	23.5	13700	쇠가죽	천 m²
				13800	양가죽	m²

C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31.7 29.8

S04700 구두및캐쥬얼화	켤레	21.1	22.8	14200 구두및캐쥬얼화	켤레
S04800 운동화	천족	10.6	7.0	14300 운동화	천족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5.1 51.9

C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7.0 14.2

S04900 제재목	m³	17.0	14.2	14700 제재목	m³

생 산 능	· 력			생신	<u></u> 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C162 나무제품 제조업

38.1 37.7

S05000 합판	m³	10.8	11.4	14800 일반합판	m³
				14900 가공합판	m³
S05100 재생목재	m³	7.2	8.2	15000 재생목재	m³
S05200 문및문틀	m³	20.1	18.1	15200 문및문틀	m³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4.4 160.9

C171 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79.4 87.5

S05300 펄프	M/T	0.8	0.8	15400	펄프	M/T
S05400 종이	M/T	39.2	47.2	15500	신문용지	M/T
				15600	백상지	M/T
				15700	중질지	M/T
				15800	박엽지	M/T
				15900	아트지	M/T
				16000	사무기기용원지	M/T
				16100	크라프트지	M/T
S05500 골판지원지	M/T	6.7	8.0	16200	골판지원지	M/T
S05600 판지	M/T	19.8	21.7	16300	판지	M/T
S05700 금속박지	M/T	11.2	7.9	16400	금속박지	M/T
S05800 위생용원지	M/T	1.7	1.9	16600	위생용원지	M/T

C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39.7 39.7

S05900 골판지및상자	천 m²	34.4	34.6	16700	골판지및상자	천 m²
S06000 위생용종이용기	M/T	5.3	5.1	17000	위생용종이용기	M/T

C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35.3 33.7

S06100 위생용종이제품	M/T	27.2	25.7	17400	위생용종이제품	M/T
S06200 벽지	천 m²	8.1	8.0	17500	벽지	천 m²

생 산 능	생	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자	가동률 가중치	품	목	단위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85.4 349.9

C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3.2 3.8

S06300 석탄코크스	M/T	3.2	3.8	18000	석탄코크스	M/T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82.2 346.1

S06400 정유	$k\ell$	269.8	333.5	18300	휘발유	kℓ
				18400	제트유	kℓ
				18500	나 <u>프</u> 타	kℓ
				18600	등유	kℓ
				18700	경유	kℓ
				18800	중유	kl
				18900	벙커C유	kℓ
				19000	윤활기유	kℓ
				19100	솔벤트	kℓ
				19200	프로판가스	kl
				19300	부탄가스	kℓ
				19600	석유아스팔트	kℓ
S06500 윤활유	kℓ	12.4	12.6	19400	윤활유	kℓ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82.9 857.0

C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57.9 316.1

S06600 에틸렌	M/T	27.0	36.6	20000	에틸렌	M/T
S06700 프로필렌	M/T	20.1	25.1	20100	프로필렌	M/T
S06800 부타디엔	M/T	6.9	8.9	20200	부타디엔	M/T
S06900 벤젠	M/T	14.2	18.4	20300	벤젠	M/T
S07000 톨루엔	M/T	9.1	9.5	20400	톨루엔	M/T
S07100 크실렌	M/T	6.1	6.5	20500	크실렌	M/T

생 산 능	생 산 능 력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 동 률 기 중 치		품 목	단위
S07200 파라크실렌	M/T	19.8	23.0	20600	파라크실렌	M/T
S07300 스티렌모너머	M/T	23.8	29.2	20800	스티렌모너머	M/T
S07400 염화비닐모너머	M/T	7.7	9.6	21200	염화비닐모너머	M/T
S07500 에틸렌글리콜	M/T	14.9	20.4	22000	에틸렌글리콜	M/T
S07600 빙초산	M/T	4.2	5.3	22300	빙초산	M/T
S07700 테레프탈산	M/T	19.5	24.9	22800	테레프탈산	M/T
S07800 아크릴로니트릴	M/T	10.7	13.2	23200	아크릴로니트릴	M/T
S07900 TDI	M/T	3.6	4.1	23300	TDI	M/T
S08000 MDI	M/T	7.8	10.6	23400	MDI	M/T
S08100 카프로락탐	M/T	6.2	8.5	23500	카프로락탐	M/T
S08200 가소제	M/T	5.6	6.4	24000	가소제	M/T
S08300 폴리프로필렌글리콜	M/T	3.9	4.5	24200	폴리프로필렌글리콜	M/T
S08400 산소	천 m³	4.6	6.1	24800	산소	천 m³
S08500 수소	천 m³	4.0	4.0	25000	수소	천 m³
S08600 카본블랙	M/T	12.1	13.7	25100	카본블랙	M/T
S08700 가성소다	M/T	9.5	11.2	25900	가성소다	M/T
S08800 안료	M/T	8.0	8.1	26700	안료	M/T
S08900 염료	M/T	8.6	8.3	26800	염료	M/T
	1 -11 -7 C	u				
C202 비료 및 질소화합됩	: 세소 [†]	自 24.3	23.1			
S09000 복합비료	M/T	24.3	23.1	27300	복합비료	M/T
					7 4 72	/ -
C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	그티 물질	질 제조업				
		194.0	225.4			
S09100 합성고무	M/T	14.4	19.3	27500	합성고무	M/T
				27591	SBR	M/T
				27592	B R	M/T
				27593	ΕPR	M/T
				27594	S B 라텍스	M/T
S09200 폴리에틸렌	M/T	48.0	55.5	27600	고밀도폴리에틸렌	M/T
				27700	저밀도폴리에틸렌	M/T
S09300 폴리스티렌	M/T	13.4	13.8	27800	폴리스티렌	M/T
S09400 ABS수지	M/T	21.6	23.5	27900	A B S 수지	M/T
S09500 PVC수지	M/T	14.4	16.3	28000	P V C 수지	M/T
S09600 폴리프로필렌	M/T	28.7	36.1	28100	폴리프로필렌	M/T

	생 산 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ı		
S09700	선형폴리에스터수지	M/T	16.9	20.7	28400	선형폴리에스터수지	M/T
S09800	폴리우레탄	M/T	5.3	4.2	28800	폴리우레탄	M/T
S09900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M/T	26.8	31.8	29000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M/T
S10000	실리콘수지제품	M/T	4.5	4.2	29100	실리콘수지제품	M/T

C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66.8 249.4

S10100 도료	kℓ	88.4	90.8	29800	도료	kℓ
S10200 인쇄잉크	M/T	14.6	14.8	30100	인쇄잉크	M/T
S10300 계면활성제	M/T	18.1	19.4	30300	계면활성제	M/T
S10400 화장비누	M/T	16.1	9.0	30400	화장비누	M/T
S10500 합성세제	M/T	43.4	42.3	30500	합성세제	M/T
				30591	세탁용세제	M/T
				30592	주방용세제	M/T
S10600 치약	M/T	16.8	12.0	30600	치약	M/T
S10700 공업용접착제	M/T	69.4	61.1	31200	공업용접착제	M/T

C205 화학섬유 제조업

39.9 43.0

		0,,,	10.0			
S10800 폴리아미드섬유	M/T	7.1	7.3	32100	폴리아미드섬유	M/T
				32191	폴리아미드장섬유	M/T
				32192	폴리아미드단섬유	M/T
S10900 폴리에스터섬유	M/T	31.6	34.6	32200	폴리에스터섬유	M/T
				32291	폴리에스터장섬유	M/T
				32292	폴리에스터단섬유	M/T
S11000 아크릴릭섬유	M/T	1.2	1.1	32400	아크릴릭섬유	M/T
				32491	아크릴릭장섬유	M/T
				32492	아크릴릭단섬유	M/T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7.5 481.8

C221 고무제품 제조업

97.7 120.8

S11100 자동차타이어	천본	73.5	98.8	32700	자동차타이어	천본

생 산 능		생산실적 부문				
품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I		1		
S11200 자동차튜브	천본	5.1	4.5	32900	자동차튜브	천본
S11300 고무호스	km	13.9	12.5	33300	고무호스	km
S11400 고무벨트	천PLY	5.2	5.0	33400	고무벨트	천PLY

C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9.8 361.0

S11500	플라스틱압출제품	M/T	108.8	105.1	33700	플라스틱관및봉	M/T
					33800	플라스틱새시바	M/T
					33900	플라스틱필름	M/T
					34100	플라스틱장판및벽지	M/T
S11600	플라스틱레저	천 m²	10.5	9.4	34000	플라스틱레저	천 m²
S11700	플라스틱타일	M/T	3.8	4.1	34200	플라스틱타일	M/T
S11800	건축용강화플라스틱제품	M/T	17.7	13.2	34300	건축용강화플라스틱제품	M/T
S11900	플라스틱사출제품	M/T	151.4	143.7	34500	플라스틱포장용기	M/T
					34800	플라스틱자동차부품	백만원
					35200	플라스틱주방용품	M/T
S12000	플라스틱비성형제품	M/T	36.7	36.5	34600	플라스틱비성형제품	M/T
S12100	발포성형제품	M/T	33.8	30.6	35000	발포성형제품	M/T
S12200	접착테이프	M/T	17.1	18.4	35100	접착테이프	M/T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41.3 343.8

C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08.1 124.6

S12300 판유	유리	M/T	10.5	11.0	35400	판유리	M/T
S12400 유리	믜섬유	M/T	5.4	6.5	35500	유리장섬유	M/T
					35600	유리단섬유	M/T
S12500 차량	량용안전유리	m²	6.6	7.3	35700	차량용안전유리	m²
S12600 건물	물용안전유리	m²	12.7	9.6	35900	건물용안전유리	m²
S12700 액건	정모니터유리	천장	61.1	76.6	36100	액정모니터유리	천장
S12800 유럽	의용기	M/T	11.8	13.6	36400	유리용기	M/T

생 산	생	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C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41.7 39.5

S12900 가정용도자식기	천개	7.3	5.9	36500	가정용도자식기	천개
S13000 위생용도기제품	M/T	7.4	6.9	36600	위생용도기제품	M/T
S13100 훼라이트마그네트	M/T	10.4	11.0	36700	훼라이트마그네트	M/T
S13200 내화벽돌	M/T	4.7	4.0	36800	내화벽돌	M/T
S13300 타일	천 m²	6.0	5.6	36900	타일	천 m²
S13400 부정형내화물	M/T	5.9	6.1	37000	부정형내화물	M/T

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2.6 141.6

S13500	시멘트크링커	천M/T	4.5	4.5	37200	시멘트크링커	천M/T
S13600	시멘트	천M/T	65.5	55.8	37300	시멘트	천M/T
S13700	드라이몰탈	M/T	5.1	4.4	37500	드라이몰탈	M/T
S13800	레미콘	천 m³	136.4	58.0	37600	레미콘	천m³
S13900	석고판제품	M/T	6.6	6.9	37700	석고판제품	M/T
S14000	콘크리트전주및파일	M/T	6.8	6.5	38000	콘크리트전주및파일	M/T
					38091	콘크리트전주	M/T
					38092	콘크리트파일	M/T
S14100	흄관	본	7.7	5.5	38100	흄관	본

C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8.9 38.1

S14200 아스콘	M/T	39.8	20.3	38400 아스콘	M/T
S14300 인조대리석	M/T	19.1	17.8	38800 인조대리석	M/T

C24 1차 금속 제조업

763.7 836.0

C241 **1**차 철강 제조업

605.6 656.5

S14400 선철	M/T	2.1	2.9	38900	선철	M/T
S14500 조강	M/T	9.5	11.9	39000	슬랩	M/T
				39100	블룸	M/T
				39200	빌렛	M/T

	생 산 능	- 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S14600 합·	 금철	M/T	4.8	4.5	39300	합금철	M/T
							-
S14700 압·	연제품	M/T	410.9	440.5	39400	봉강	M/T
					39500	철근	M/T
					39600	선재	M/T
					39700	형강	M/T
					39800	중후판	M/T
					39900	열연대강	M/T
					40000	스텐레스강판	M/T
					40100	궤조	M/T
					40200	전기냉연강판	M/T
					40300	냉연강대	M/T
S14800 주	철관	M/T	3.1	2.7	41100	주철관	M/T
S14900 강:	관	M/T	53.6	54.5	41200	강관	M/T
S15000 석3	도강판	M/T	21.6	19.4	41400	석도강판	M/T
S15100 아	연도강판	M/T	64.3	82.3	41500	아연도강판	M/T
S15200 칼i	라강판	M/T	35.7	37.8	41600	칼라강판	M/T

C242 **1**차 비칠금속 제조업

118.0 135.3

S15300	전기동	M/T	18.6	22.5	41900	전기동	M/T
S15400	알루미늄합금괴	M/T	10.9	11.8	42000	알루미늄합금괴	M/T
S15500	연괴	M/T	2.3	2.8	42100	연괴	M/T
S15600	아연괴	M/T	10.2	12.3	42200	아연괴	M/T
S15700	금괴	kg	7.8	7.4	42500	금괴	kg
S15800	동압연제품	M/T	40.6	48.3	42600	나동선	M/T
					42700	동판및띠	M/T
					42800	동관	M/T
					42900	동봉및형재	M/T
S15900	동박	M/T	1.6	1.9	43000	동박	M/T
S16000	알루미늄판및띠	M/T	10.2	11.9	43200	알루미늄판및띠	M/T
S16100	알루미늄새시바	M/T	10.0	10.0	43400	알루미늄새시바	M/T
S16200	알루미늄박	M/T	5.8	6.4	43500	알루미늄박	M/T

생 산	생	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C243 금속주조업

40.1 44.2

S16300 주물	M/T	40.1	44.2	43800 주물	M/T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60.9 544.5

C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16.6 186.1

S16400 새시문및창틀	M/T	47.9	35.5	44000	새시문및창틀	M/T
S16500 금속패널제품	m²	121.7	101.6	44200	금속패널제품	m²
S16600 산업용보일러	T/H	47.0	49.0	44700	산업용보일러	T/H

C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44.3 358.4

S16700 단조물	M/T	84.3	91.5	44900	단조물	M/T
S16800 쇠못	M/T	6.6	4.8	45800	쇠못	M/T
S16900 나사제품	M/T	63.2	65.7	45900	나사제품	백만원
S17000 스프링	M/T	21.8	24.9	46000	스프링	M/T
S17100 와이어로프	M/T	16.6	16.3	46200	와이어로프	M/T
S17200 병마개	천개	6.2	6.4	46500	병마개	천개
S17300 금속캔	천개	52.4	49.2	46600	식관	천개
				46700	잡관	천개
S17400 알루미늄제가정용품	M/T	30.0	33.1	46900	알루미늄제가정용품	M/T
S17500 스테인리스제가정용품	백만원	26.0	25.6	47000	스테인리스제가정용품	백만원
S17600 용접봉	M/T	37.2	40.9	47200	용접봉	M/T

C26 전지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07.6 2186.7

C261 반도체 제조업

442.5 574.1

S17700 바이폴라집적회로	백만원	2.0	2.0	47300	바이폴라집적회로	백만원
-----------------	-----	-----	-----	-------	----------	-----

생 산 능	- 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S17800 모스메모리	백만원	328.1	437.5	47400	모스D램메모리	백만원
31/800 조스케소니	기 작 건 편	320.1	437.3			· ·
				47500	모스S램메모리	백만원
				47600	모스기타메모리	백만원
S17900 모스조립	천개	37.6	43.2	47700	모스조립	천개
S18000 혼성집적회로	백만원	3.3	3.9	47800	혼성집적회로	백만원
S18100 모스비메모리	백만원	49.7	64.6	47900	CMOS 이미지센서	백만원
				48000	DDI	백만원
				48100	기타모스비메모리	백만원
S18200 트랜지스터	천개	10.7	10.3	48200	트랜지스터	천개
S18300 실리콘웨이퍼	m²	11.1	12.6	48500	실리콘웨이퍼	m²

C262 전자부품 제조업

691.6 755.8

			071.0	700.0			
S18400	백라이트 유니트	백만원	44.6	43.7	48900	백라이트 유니트	백만원
S18500	노트북및모니터용LCD	천개	287.2	365.8	49000	노트북용LCD	천개
					49100	모니터용LCD	천개
					49200	TV용 LCD	천개
S18600	기타LCD	천개	135.5	127.3	49300	기타LCD	천개
S18700	인쇄회로기판	m²	124.6	121.4	50000	페놀인쇄회로기판	백만원
					50100	에폭시인쇄회로기판	백만원
S18800	칼라브라운관	개	33.9	38.4	50200	칼라브라운관	개
S18900	섀도마스크	천개	11.3	9.1	50400	섀도마스크	천개
S19000	축전기	천개	14.4	15.4	50500	축전기	천개
S19100	변성기	천개	5.3	5.6	50800	변성기	천개
S19200	전자코일	천개	7.0	3.6	50900	전자코일	천개
S19300	훼라이트코아	천개	5.0	2.7	51100	훼라이트코아	천개
S19400	리드프레임	천개	22.8	22.8	51300	리드프레임	천개

C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74.8 135.4

S19500 컴퓨터본체	대	25.1	21.5	51400	컴퓨터본체	백만원
S19600 휴대용컴퓨터	대	38.3	19.3	51500	휴대용컴퓨터	백만원
S19700 디스크드라이브	대	38.3	41.7	51600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백만원
				51700	CD드라이브	대
S19800 액정모니터	대	53.7	38.2	51900	액정모니터	대
S19900 프린터	대	19.4	14.7	52000	프린터	백만원

생 산	생	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C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530.2 576.8

S20000	유선전화기	대	12.5	10.3	52400	유선전화기	대
					52500	키폰	대
S20100	팩시밀리	대	8.3	6.6	52800	팩시밀리	대
S20200	셋톱박스	대	34.2	24.0	53200	셋톱박스	대
S20300	휴대용전화기	대	455.1	520.2	53500	휴대용전화기(CDMA 방식)	대
					53600	휴대용전화기(GM 방식)	대
S20400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천개	20.1	15.7	53700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천개

C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68.5 144.6

S20500 일반칼라TV	대	33.2	31.2	54300	일반칼라TV	대
S20600 TV튜너	천개	2.5	2.2	54400	T V튜너	천개
S20700 FPD TV	대	104.5	92.4	54500	LCD TV	대
				54600	PDP TV	대
S20800 디지털카메라	개	10.5	6.4	54800	디지털카메라	개
S20900 카오디오	대	17.8	12.4	55200	카오디오	대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7.4 113.9

C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9.0 35.3

S21000 의료용방사선기기	백만원	3.9	4.1	56300	의료용방사선기기	백만원
S21100 초음파의료기기	대	15.0	12.3	56400	초음파의료기기	대
S21200 의료처치기구	천개	20.1	18.9	56800	의료처치기구	천개

C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60.9 54.5

S21300 무선원격조절기	대	6.5	6.5	56900	무선원격조절기	대
S21400 전자계측기	대	14.6	9.0	57000	전자계측기	백만원
S21500 기체및액체공급계기	대	10.6	9.2	57100	기체및액체공급계기	대
S21600 적산전력계	대	2.4	1.6	57300	적산전력계	대

생 산 능	· 력				생산실적	석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晋 [목	단위		
C21F00 소드케	FJ)	2.6	1.6	F7400	ム レ刊		-J)		
S21700 속도계	대	3.6	4.6	57400	속도계		대		
S21800 온도조절기구	백만원	23.2	23.6	57500	온도조절기-	구	백만원		
C273 안경, 사진장비 및	C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2.2	21.0						
S21900 안경테	천개	3.4	2.3	57900	안경테		천개		
S22000 안경렌즈	천개	4.9	5.6	57700	안경렌즈		천개		
S22100 광학렌즈	개	13.9	13.1	57800	광학렌즈		개		
C274 시계 및 시계부품	C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5.3	3.1						
S22200 휴대용시계	개	5.3	3.1	57900	휴대용시계		개		

C28 전기장비 제조업

487.9 498.6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187.8 205.1

S22300 전동기	kW	26.2	28.4	58000	전동기	kW
S22400 소형전동기	천개	82.3	86.9	58100	소형전동기	천개
				58191	직류소형전동기	천개
				58192	교류소형전동기	천개
S22500 변압기	KVA	49.2	58.1	58300	변압기	KVA
S22600 전류전압공급기	대	30.1	31.7	58900	전류전압공급기	대

C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5.1 22.7

S22700 건전지	천개	2.6	2.6	60100	건전지	천개
S22800 축전지	개	9.0	9.4	60200	축전지	개
S22900 소형2차전지셀	천개	13.5	10.7	60300	소형2차전지셀	천개

C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96.2 87.5

S23000 광섬유케이블	km	11.9	6.9	60400	광섬유케이블	km

생 산 능 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기중치	기동률 기중치		프	목	단위	
S23100 통신선및전력선	M/T	71.5	67.1	60500	전력선		M/T	
				60600	통신선		M/T	
S23200 마그네틱선	M/T	12.8	13.5	60700	마그네틱	선	M/T	

C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9.6 42.6

S23300 전구	천개	11.0	14.1	60900	필라멘트전구	천개
				61000	형광전구	천개
S23400 차량용조명등	천개	11.1	12.1	61100	차량용조명등	백만원
S23500 형광등	개	17.5	16.4	61200	형광등	개

C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133.9 134.3

S23600	전자레인지	대	15.3	10.6	61300	전자레인지	대
S23700	전기밥솥	대	9.8	8.5	61400	전기밥솥	대
S23800	전기청소기	대	8.2	8.8	61500	전기청소기	대
S23900	냉장고	대	55.8	57.7	61900	소형냉장고	대
					62000	중형냉장고	대
					62100	대형냉장고	대
					62200	김치냉장고	대
S24000	세탁기	대	25.2	32.5	62300	세탁기	대
S24100	비데	대	4.7	3.7	62700	비데	대
S24200	가정용보일러	대	7.5	6.3	62800	기름보일러	대
					62900	가스보일러	대
S24300	가스레인지	대	7.4	6.2	63000	가스레인지	대
					63100	가스오븐레인지	대

C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3 6.4

S24400 시동발전및전동기	대	5.3	6.4	63400	시동발전및전동기	대
-----------------	---	-----	-----	-------	----------	---

생 산	생]산실적 부문				
품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가동률 가중치	표	목	단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00.7 818.3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46.2 427.4

S24500	선박용내연기관	kW	47.9	53.5	63500	선박용내연기관	kW
S24600	기계용내연기관	kW	3.5	3.5	63600	기계용내연기관	kW
S24700	산업용펌프	kW	32.7	24.3	63791	산업용펌프	백만원
S24800	산업용공기압축기	대	7.4	6.5	63900	산업용공기압축기	대
S24900	냉매용공기압축기	대	11.1	12.5	64000	냉매용공기압축기	대
S25000	차량에어컨용 압축기	대	14.7	11.9	64200	차량에어컨용 압축기	대
S25100	밸브	백만원	54.3	49.7	64300	밸브	백만원
S25200	베어링	M/T	33.8	34.6	64400	베어링	백만원
S25300	지게차	대	11.4	12.6	65000	지게차	대
S25400	엘리베이터	대	19.2	20.5	65100	엘리베이터	대
S25500	룸에어컨	대	52.8	40.4	66200	룸에어컨	대
S25600	차량용에어컨	대	38.8	43.3	66300	차량용에어컨	대
S25700	패키지형에어컨	대	34.0	27.5	66400	패키지형에어컨	대
S25800	시스템에어컨	대	12.0	14.8	66800	시스템에어컨	대
S25900	정수기	대	15.0	16.4	67200	정수기	대
S26000	전자복사기	대	12.7	15.9	67500	전자복사기	대
S26100	금융거래자동화기기	대	12.3	9.8	67700	금융거래자동화기기	대
S26200	자동판매기	대	2.9	2.1	68000	자동판매기	대
S26300	전기용접기	대	29.7	27.6	68300	전기용접기	대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54.5 390.9

S26400 농업용트랙터	대	31.2	31.5	68400	농업용트랙터	대
S26500 콤바인	대	25.1	6.8	68600	콤바인	대
S26600 경운기	대	3.9	2.8	68700	경운기	대
S26700 수치제어선반	대	27.3	24.5	69600	수치제어선반	대
S26800 머시닝센타	대	24.1	23.7	69700	머시닝센타	대
S26900 굴착기	대	79.3	84.4	70100	굴착기	대
S27000 금형	백만원	263.6	217.2	72400	금형	백만원
				72491	프레스금형	백만원
				72492	플라스틱사출용금형	백만원
				72493	기타금형	백만원

생 산	생]산실적 부문				
품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가동률 가중치	표	목	단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74.7 1221.8

C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1237.3 1195.7

S27100 자동차용내연기관	대	56.6	58.5	72700	자동차용내연기관	대
S27200 승용차	대	999.2	1002.3	72800	경승용차	대
				72900	소형승용차	대
				73000	중형승용차	대
				73100	대형승용차	대
				73200	SUV형승용차	대
				73300	CDV형승용차	대
S27300 버스	대	89.2	60.1	73400	소형버스	대
				73491	경버스	대
				73492	소형버스	대
				73500	중형버스	대
				73600	대형버스	대
S27400 트럭	대	92.3	74.8	73800	소형트럭	대
				73891	경트럭	대
				73892	소형트럭	대
				73900	중형트럭	대
				74000	대형트럭	대

C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7.4 26.1

S27500 특장차	대	37.4	26.1	74100 특장차	대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9.5 282.3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35.0 265.8

S27600 철강선박	CGT	235.0	265.8	75200	철강유조선	CGT
				75300	가스및화학운반선	CGT

생 산 능	- 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S27600 철강선박(계속)				75400	 화물선	CGT				
				75491	. –	CGT				
				75492	– –	CGT				
				75493		CGT				
				75494		CGT				
				75600		CGT				
				I						
C312 철도장비 제조업										
		17.1	10.0							
S27700 전동차	량	17.1	10.0	75700	전동차	량				
	•									
C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C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6.5							
S27800 모터사이클	대	7.4	6.5	76000	모터싸이클	대				

C32	가구 제조업						
			92.2	87.6			
C320	가구 제조업						
			92.2	87.6			
S27900	차량용내장가구	백만원	63.8	58.2	76200	차량용내장가구	백만원
S28000	싱크대	백만원	28.4	29.4	76400	싱크대	백만원

C33 기타 제품 제조업 88.4 60.3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15.4 14.6

S28100 귀금속장신구	백만원	11.8	10.4	77200	귀금속장신구	백만원
S28200 금속주화	M/T	3.6	4.2	77300	금속주화	M/T

생 산 능 력					생산실적 부문			
품 목	단위	능력지수 가중치	기동률 기중치		품	목	단위	
C332 악기 제조업								
		8.7	7.2					
S28300 피아노	대	4.3	2.5	77500	피아노		대	
S28400 전자악기	백만원	4.4	4.7	77700	전자악기		백만원	
C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24.8	10.8					
S28500 낚싯대	개	24.8	10.8	77800	낚싯대		개	
C339 그외 기타 제품 제	조업							
		39.5	27.7					
S28600 볼펜	천개	15.7	8.7	78300	볼펜		천개	
S28700 지퍼	km	19.0	14.8	79000	지퍼		km	
S28800 담배필터	M/T	4.8	4.2	79100	담배필터		M/T	

9. 과태료부과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주 소:

제 목 : 통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조회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통계법 제 o 조 o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장소 :

다. 위반내용 :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상기 기한내에 서면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진술서 1부

통계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진술서

수 신 : 통계청장

발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

의 견 내 용:

년 월 일

진 술 인 인

[별표]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제53조제3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횟수별 과태료			
위반 사항	해당 법규정	부과기준			
	911 O H 11 O	1회	2회	3회	
		101	201	이상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1조 제3항제2호	50 (5)	80 (10)	100 (2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응답을 한 자	법 제41조 제3항제3호	50 (5)	80 (10)	100 (20)	

비 고: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의 총액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괄호 안은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의 대상이 개인이나 가구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 관련규정(통계법 제25조, 제26조).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제 년도-ㅇ 호 시행년월일 : . . .

수 신:

제 목 : 통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통계법 제 o 조 o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장소 :

다. 위반내용 :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년 이월 이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통계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 신 : 통계청장

발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	1 -11 - 1 A1 A1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17172.	~ 1 % 한 후 후 .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통계법 제41조, 제42조와 관련입니다.

2. 통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가 제기되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한이의제기자	주 소		
사업체내역	등록번호	상 호	
가답세대학	소 재 지		
키 비 크	의견조회일자	과태료 처분	
과 내 표 처분내역	기신소의 현사	통지일자	
기군대학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통계법제41조,제42조에의한과태료부과규정(훈령) 1부.

통계청장

ဂ္၂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수납부

일련	일련 통지서	통지서 통 지_ 번 호 연월일	납부기한	징 수 결정액	미수 금액	납부의	납부의무자	
번호	번 호		납 부 연월일	수납액	금액	주 소	성명	위반 사항

※ 과태료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시 기록정리

< 지침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 >

- 산업동향과장 **윤 명 준**
- 생산실적 부문

사 무 관 : **유호준**

주 무 관 : 전찬선 임성자 권혁빈

이봉희 남상민 김금녀

■ 생산능력 및 가동률 부문

사 무 관 : **박은영**

주 무 관 : **박라나 설재근**